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2주년 기념



발간사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하며

인권의 가장 큰 원칙은 '보편성'입니다. 인류사회가 관습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본래 의미도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입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되는 것이지 어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인권이 학생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인권 보장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학생이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으로서의 삶을 모색하고 훈련하는 기회여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일로 유보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서 학교, 시민과 시민이 만나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로서 학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2주년 째가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에서 확인하고 있는 아동권리와 기본권에 근거해 학생 인권의 개념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권리별 침해사례와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문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서 각각의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원칙과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미이며, 서로가 서로의 이해를 돋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을 떠나 모든 학교에서 이 사례집이 학생인권의 길라잡이가 되어 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년 11월

CONTENTS

학생인권 공동사례집

1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15 ❶ 건강권과 보건권

- 16** [사례 1] 학생의 생리공결 제도 안내 및 불인정
- 17** [사례 2]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 요구
- 17** [사례 3]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지
- 18** [사례 4] 미세먼지 경보를 무시한 운동장 수업
- 18** [사례 5] 공개적인 금연지도(학생들 앞에서 피우도록 지시)
- 19** [사례 6] 보건실 사용횟수 획일적 제한
- 19** [사례 7] 화장실 이용 및 물 마시기 제한
- 19** [사례 8] 화장실 이용 제한

20 ❷ 안전권

- 21** [사례 1] 방과 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21** [사례 2] 체육수업 중 상해 발생, 안전 조치 미흡

22 ❸ 급식권

- 22** [사례 1] 급식권 침해 사례

2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25 ❶ 차별 및 혐오표현

- 27** [사례 1]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 27** [사례 2] 남녀 출석번호 부여 차별
- 27** [사례 3]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권 미부여
- 28** [사례 4] 성적만을 기준으로 방송(EBS ○○퀴즈) 참여자격 부여
- 28** [사례 5] 출석번호 키순서로 비공식 부여
- 29** [사례 6] 학생만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
- 29** [사례 7]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적절 발언
- 30** [사례 8] 특정종교 편견에 의한 혐오 발언 및 성희롱
- 30** [사례 9] 심화반 운영
- 31** [사례 10] 학교구성원 차별

32 ② 폭력(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언어 폭력

- 33 [사례 1]** 수업 중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언어폭력
- 33 [사례 2]** 비속어, 욕설 사용
- 34 [사례 3]**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엄마, 엄마친구 소개 등 농담
- 34 [사례 4]** 공개적으로 보호자의 사과요구
- 35 [사례 5]** 면담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공격
- 36 [사례 6]**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어 사용

2) 체벌(간접, 직접체벌)

- 38 [사례 1]**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지시함
- 39 [사례 2]** 일상적으로 직접체벌, 간접체벌
- 39 [사례 3]** 무릎 꽂고 발바닥 체벌
- 40 [사례 4]** 체육수업시간,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장시간 의자에 앉혀둠
- 40 [사례 5]** 빗자루로 엉덩이 체벌
- 41 [사례 6]** 책상 위에 무릎 꽂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 41 [사례 7]** 골프채를 들고 협박 등
- 42 [사례 8]** 벽을 보고 서있게 한 체벌
- 42 [사례 9]**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 43 [사례 10]** 교사가 장애학생 스스로를 때리게 함

3) 성폭력

- 46 [사례 1]** ‘볼에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는 성희롱
- 46 [사례 2]** 여학생 체육복 지퍼내리기, 뺨 깨물음 등
- 48 [사례 3]** 일상적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비하발언 등
- 49 [사례 4]**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 행위

4) 따돌림

- 50 [사례 1]**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51 [사례 2]** 뒷담화를 이유로 따돌림 지시
- 52 [사례 3]** 따돌림 피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따돌림 확대

5) 폭력 예방 및 보호

- 54 [사례 1]** 의원면직 처리로 인한 폭력 예방조치 미흡
- 54 [사례 2]** 체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

55 ❸ 교육환경

- 55** [사례 1] 교직원 화장실 이용시 벌점 부과, 탈의실, 샤워실 미설치
- 56** [사례 2] 한 여름 짬통처럼 더운 교실
- 56** [사례 3] 남녀 화장실 수, 면적 등의 문제
- 57** [사례 4] 책걸상 노후, 화장실내 소모품 미비치 등
- 57** [사례 5] 기숙사내 시설 환경과 CCTV 운영 등
- 58** [사례 6] 교사용, 학생용 화장실 차별적 화장지 비치

59 ❹ 징계 등 절차

- 61** [사례 1] 선도처분을 앞둔 학생에게 전학 권유
- 61** [사례 2] 다음 날 선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
- 62** [사례 3] 생활복 착용 적발시 해당 반 연대책임
- 62** [사례 4] 학급규칙으로 정한 지각 벌금
- 63** [사례 5] 선도부의 임의 벌점과 육설 등
- 63** [사례 6]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수업배제
- 64** [사례 7] 풍기문란, 학교 품위손상이 퇴학 이유
- 64** [사례 8] 재입학 불허
- 65** [사례 9] 흡연2회, 무단결과 누적으로 인한 퇴학
- 65** [사례 10] 봉사로서 청소를 하도록 함

66 ❽ 노동권

- 67** [사례 1] 늦은 만큼 벌금을 매겨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제외
- 67** [사례 2]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수습 적용
- 67** [사례 3] 주휴수당 미지급
- 68** [사례 4] 아르바이트 중 일명 ‘꺽기’
- 68** [사례 5] 학생이 교무실, 교장실까지 청소

70 ❾ 소수학생 보호

- 71** [사례 1] 장애학생 대상 비장애학생들의 괴롭힘
- 71** [사례 2] 보호자 동행 어려운 지체장애학생의 현장학습 참여 제한
- 72** [사례 3]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 72** [사례 4] 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75 ❶ 학습권

- 76 [사례 1]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과 전학
- 76 [사례 2] 학교규칙 위반 조사를 이유로 수업 배제
- 77 [사례 3] 교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역사 교육
- 78 [사례 4]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 78 [사례 5] 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자퇴 사유
- 79 [사례 6] 학습선택권 침해
- 79 [사례 7] 임의 귀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 80 [사례 8] 교사의 부적절 행위
- 81 [사례 9]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 관련 설문조사 대상으로 학생은 배제
- 81 [사례 10] 학급 별칙으로 야간 자율학습 강제
- 82 [사례 11] 자기주도학습 참여 강제
- 82 [사례 12] 행사 지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 83 [사례 13] 교사의 수업시간을 자습시간 운영 등
- 83 [사례 14]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준비가 부실한 학생을 강제퇴장시킴

84 ❷ 휴식권

- 85 [사례 1] 초등학생, 쉬는 시간 5분 등
- 85 [사례 2] 주말 동안의 기숙사 생활 일률적 강제
- 86 [사례 3] 3일 동안 학생들의 쉬는 시간 박탈
- 86 [사례 4]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둠
- 87 [사례 5] 반복적 텃밭 관리 보조에 따른 휴식권 침해
- 88 [사례 6] 별칙 누적에 따른 보충학습을 위해 점심시간 통제

89 ❸ 문화 향유권

- 89 [사례 1]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활동 폐지

90 ❹ 개성실현의 자유

- 91 [사례 1] 외투 착용에 대한 인권침해
- 91 [사례 2] 교문지도 시 복장 일괄검사
- 92 [사례 3] 학생회 주도 용의복장 점검
- 93 [생각해보기] 학생선도부 운영은 적절한 것인가?

4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94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95 [사례 1] 특정학급 휴대전화 일괄수거
- 96 [사례 2] 월별 상·별점 누계 공개
- 96 [사례 3] 도난을 이유로 일괄 소지품검사
- 97 [사례 4] 수업내용을 촬영해 학생지도에 활용
- 97 [사례 5] 도난·분실물 확인을 위한 학년 전체 소지품 검사
- 98 [사례 6] 상별점 내역 공개
- 98 [사례 7]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살펴봄
- 99 [사례 8] 소지품 압수에 대한 기준 제시 요구
- 100 [사례 9] 교복에 박음질로 고정한 명찰
- 100 [사례 10] CCTV 불법 열람
- 101 [사례 11]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숙사 방을 검사

102 ■ 정보에 관한 권리

- 103 [사례 1] 휴대전화 학교 반입 및 소지 금지와 일괄수거
- 103 [사례 2] 동의 절차 없이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집
- 104 [사례 3] 학생 징계사실 공표
- 104 [사례 4] 학급 게시판에 학생 별점 점수 공개
- 105 [사례 5] 기숙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109 ■ 양심의 자유

- 110 [사례 1] 일반고 배정 결과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
- 110 [사례 2] 교칙위반에 대한 선도처분 감수 서약
- 111 [사례 3] 일기쓰기 강제 및 검사

112 ■ 종교의 자유

- 113 [사례 1] 조회시간 전후 전교생에게 기도 강요
- 113 [사례 2] 학생지도시 종교관련 의식 실시, 이단 논쟁
- 114 [사례 3] 창의적 체험활동 종교 관련 내용만 운영

115 ■ 표현의 자유

- 116 [사례 1] 학생들의 서명운동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지도
- 117 [사례 2] 청소년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한 학생대상 징계
- 117 [사례 3]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함
- 118 [사례 4] 징계 부당성을 호소하는 학내 게시물 철거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119 ④ 자치활동의 권리

- 120 [사례 1]** 질병을 이유로 임원 입후보 제한
- 120 [사례 2]** 교사 추천서로 인해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 121 [사례 3]** 상벌점을 이유로 한 입후보 제한
- 121 [사례 4]** 담임교사가 학급 임원 지명하여 임명
- 122 [사례 5]** 학생회장 선거를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
- 123 [사례 6]** 학년회·학생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

124 ⑤ 정책 결정권

- 124 [사례 1]** 학교 출입문 통행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 없음
- 125 [사례 2]** 학교규칙 개정절차에서 학생회 대의원회 의견만 수렴
- 126 [생각해보기]** 학교 구성원 모두가 1인 1표 방식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127 ⑥ 상담 및 조사 청구권

- 127 [사례 1]** 교육청 담당자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한 학생 수소문
- 128 [사례 2]** 학생인권침해 학생 참고인에 대한 거짓진술 강요
- 128 [사례 3]** 인권침해 구제 요청을 이유로 조롱 등 뒷담화
- 129 [사례 4]** 민원 제기에 대해 반복적인 불만 표시

- 133 [사례 1]** 자기(운영)결정권 - 거짓 진학정보 제공하여 학생 진학시킴
- 134 [사례 2]** 생체정보자기결정권 - 전체 학생 대상 강제소변검사
- 135 [사례 3]** 일반적 행동자유권 - 앞문 사용금지
- 135 [사례 4]** 일반적 행동자유권 - 다른 학년 복도 출입 금지
- 136 [사례 5]** 일반적 행동자유권 - 수업중 화장실 사용
- 137 [사례 6]**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이사짐 나르게 함
- 137 [사례 7]**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심부름 시킴
- 138 [생각해보기]** 오토바이 등하교 금지

- 143 [부록 1]** 「헌법」
- 148 [부록 2]** 「세계인권선언」
- 154 [부록 3]**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48년 인류사회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불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통해 인간이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가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의 선언이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서 아동은 예외였다. 세계인권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 어른으로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했다. 그러다 1959년 ‘유엔아동 권리선언’이 만들어지면서 아동을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인격체로 인식하게 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의 한계는 분명했지만, 전 세계 각국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각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각성은 유엔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유엔은 ‘유엔아동권리선언’ 20주년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10년의 노력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 세계 196개국(2018년 현재)이 가입하였으며, 유엔이 채택한 협약 중에 가입국이 가장 많은 협약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1년 9월 17일 유엔에 가입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 당사국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법으로 아동을 보호의 대상자 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기준이자 가입 당사국들의 구체적인 실천노력 및 의무를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40조까지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적 효력(헌법 제6조)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를 준수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사례집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아동)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집은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작성하였다. 각 지역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개선책과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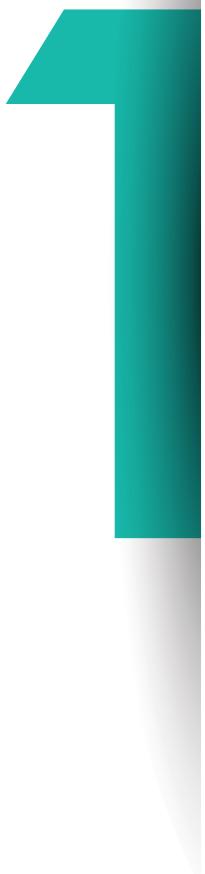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1 건강권과 보건권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 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5호(2013년)에서 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재활·완화 서비스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최대 잠재력 수준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최고 수준의 건강을 획득하는 조건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생의 건강권은 개인의 건강상태(신체적 정신적 건강, 행복도,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 수면, 영양 및 식습관, 신체활동, 보건행동,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검진 및 의료이용, 건강 환경, 보건 관련 교육 및 참여 등이 관련이 있다.¹ 학교에서는 신체치수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조도의 조명기구 설치, 화장실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비누나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교실 냉난방이 되지 않는 경우, 몸이 아파 조퇴를 하거나 병원에 다녀오려고 해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허락되지 않는 경우, 보건실 이용의 까다로운 절차, 방학 중 보충수업을 진행하는데도 보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따로 응급약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 학교 실내공간의 공기의 질, 청결한 급식환경, 청결한 학교 시설 관리 등이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이 있다.²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2019년)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2007년)

일반적으로 보건권은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생의 보건권은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보건권은 개인의 건강문제를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학교 안전공제회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례 1. 학생의 생리공결 제도 안내 및 불인정

A학생은 교육청의 학생의견수렴기구 활동을 통해서야 생리공결 제도를 알게 되었다며 학교에서 여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생리공결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생리공결을 인정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2월 생리공결 제도를 정비하도록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하였고, 이후 생리로 인한 결석 등이 볼이익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규범적인 권리라 할지라도 권리당사자가 그 권리를 알지 못한다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생리공결 제도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관련 정책 정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생리공결 신청 시 병원 진료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참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2020년)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가 포함)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사례 2 | 생리통으로 병결석 요청 시 의사소견서 요구

A고등학교는 생리통으로 병결석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평소에 무단결석과 무단 지각이 많았다는 이유와 생리 공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소견서를 요구하였다.



해설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은, 월 1일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을 기록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리공결제도 오용을 우려한 과도한 확인 절차 과정은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유사사례

- 보건교사에게 교체한 생리대를 보여주도록 한 사례
- 친구가 화장실에 함께 가서 생리중인지 확인하고 오도록 한 사례



사례 3 | 추운 날씨와 관계없이 교내 외투 착용 금지

A중학교는 교문에서부터 교내까지 교복 위에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다니는 B학생은 감기가 들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하복, 춘추복 교복 착용도 일정 시기에 맞춘 일률적 착용보다는 학생이 건강상태 등을 스스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겉옷 규제 관련 교육부 안내사항

- 환절기 및 개인 건강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적 착용 금지 기간 규칙 개정(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41, 2016. 1. 5.)
- 교복의 착용 시기, 교복 외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7027, 2018. 11. 27.)



사례 4 | 미세먼지 경보를 무시한 운동장 수업

A고등학교는 미세먼지 나쁨 경보로 외출 자제주의보가 발령되었음에도 학교 수업시간이 정해졌다는 이유로 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해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 안내」(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1842, 2018.3.26.),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및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안내」(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130, 2018.4.6.)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례 5 | 공개적인 금연지도(학생들 앞에서 피우도록 지시)

A고등학교 B교사는 야간자율학습감독을 하다가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해당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려면 남자답게 공개적으로 피워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위 학생들을 급식실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담배를 나누어 주면서 피우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뭇거리자, B교사는 “싸다구를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담배를 피웠다. 위와 같은 상황을 당시 점심을 먹으러 급식실로 가던 다른 학생들이 목격하였다.



해설

학교는 금연시설이고, 담배는 현행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흡연은 특히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 학생 생활교육에서도 중점적으로 금연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다.

흡연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일이나, 위와 같이 공개적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시킨 것은 교사의 적절한 지도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이른바 금연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된 학생들은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B교사가 “싸다구 맞을래? 담배를 피울래?”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포를 느껴 강압적으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들이 느꼈던 수치심의 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6 | 보건실 사용횟수 획일적 제한

A학교는 학생들이 꾀병이 많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 횟수를 정하였다.



해설

학생에 따라서는 교육적 합의를 부정하거나 어기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의 악용을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의 행동 범위를 일방적,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보건실 이용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획일적 기준을 정해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학생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적절하다.



사례 7 | 화장실 이용 및 물 마시기 제한

A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면학시간 오후 9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화장실 이용시간 이외에는 화장실 이용 명부 작성 및 물 마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해설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를 포함하는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헌법」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제25조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제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례 8 | 화장실 이용 제한

크론병이 있어서 화장실 가야된다고 말하고 가려했는데 1년에 2번만 가라고 안 보내 주셨다. 너무 급해서 빨리 다녀온다고 갔다 왔으나 10분이 넘었다며 출석부에 미인정 출석을 적었다.



해설

교사가 학생 화장실 사용을 1학기 2회 공지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15분 미인정 결과처리는 크론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시간이라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다.

2 안전권

「**헌법**」 제37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이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위험사회에서 개인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권리(안전권)는 국가를 상대로 위험에 대한 예방·완화·극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³

안전에 대한 권리는 재난으로부터 안전, 안보 위험으로부터 안전, 임노동 위험으로부터 안전, 새로운 안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생의 안전권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의 문제 대부분 해당된다.

재난으로부터 안전은 크게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권과 사고에 대한 안전권을 말한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보호·관리하고,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학교에 있다.

학교에서 페인트, 바닥재 등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실 창문이나 복도 난간에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높은 놀이시설 아래 모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련시설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시설을 선택할 때 화재나 추락사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학생의 안전권과 관련이 있다.⁴

3 신용인, 「위험사회와 안전권–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2020년 9월)

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2007년)



사례 1 | 방과 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A초등학교 B학생은 운동장에서 놀다가 C학생이 찬 공에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같은 학교의 D교사는 정규 수업이 종료된 지 2시간 후에 일어난 사고도 학교 안전사고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다.



해설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그와 관련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B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친 시간은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을 넘은 것으로 이해돼 학교 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교는 B학생과 C학생 간 손해배상 처리에 있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법 제2조(정의)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사례 2 | 체육수업 중 상해 발생, 안전 조치 미흡

A학생은 2교시 체육수업 중 B교사가 던진 공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지만, B교사는 경미한 부상으로 판단하여 수업 중 벤치에서만 쉬도록 하였다. A학생이 점심시간 담임교사에게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고, 담임교사가 교내 '학교 보건관리 및 건강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교사의 부재로 보호자에게 연락한 후에야 A학생은 외출하여 병원에 가게 되었으며, 손가락 골절로 3주 이상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해설

B교사는 A학생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을 인식하고도 자의적으로 병원 치료 없이 회복 가능하다고 진단하여 보건교사 인솔, 보호자 연락 등 교내 사고 관리 체계를 즉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A학생이 수업 중 다친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로 볼 수 있고,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 「안전사고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응급 상황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경우에도 안전 조치 노력을 해야 한다.

3 급식권

성장기 학생에게는 양질의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생은 급식이 어떠한 재료와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급식업체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학교는 이에 대해 안내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 따라 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교육에 있어 무상 교육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무상 의무교육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 | 급식권 침해 사례

A고등학교 B교사는 점심시간에 쪽지 재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A중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 잠을 자거나,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교시 점심(급식)시간에 정신교육을 시켰다.

A중학교 B교사는 급식비 미납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급식비 미납자 명단을 가지고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면서, 미납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밥을 뺏어 먹는 것이다”, “급식비를 내고 먹자”라고 말 하였다.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를 포함하는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1 차별 및 혐오표현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2조,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2조 등은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평등은 크게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기회와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개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고, 민주주의에서 모두 선거권을 부여받는 것 등이 형식적 평등에 해당한다. 형식적 평등은 산술적·절대적 평등, 평균적 정의라고도 한다.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 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선천적·후천적 차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각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대우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고소득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이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비례적·상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라고도 한다.⁵

평등은 신분제나 절대 권력, 사회적 편견 등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 기회균등, 능력과 특성에 따른 대우 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형식적 평등 원칙과 실질적 평등 원칙에 따라야만 불평등한 사회 구조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⁵ 출처 : 다음 백과 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X76137>)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직접차별)를 의미하며,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임이 입증될 수 없는 결과적 차별(간접차별)을 말한다.⁶

차별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입증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차등대우가 특정한 직무의 본질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행이나 사업 본질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차별 금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현존하는 현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조치(적극적 우대조치 또는 잠정적 우대조치)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보지 않는다.(예, 장애인, 저소득 계층 자녀를 위한 지원 등)

혐오표현은 그 표적이 되는 대상 집단에 관한 기존의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혐오표현의 대상 집단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며,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더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은 차별의 문제이며, 통상적인 욕설이나 비난 발언과 구분된다.

“혐오표현”이라 함은 “성별·장애·종교·나이·출신지역·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⁷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⁸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여기서, “모욕, 비하, 멸시, 위협”이란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혐오스러운 것에 비유하여 모욕, 비하, 멸시하거나 욕설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이란 어떤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널리 알리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한다.⁹

혐오표현은 개인에게는 두려움, 슬픔,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불안, 걱정, 수치심, 좌절감, 피곤, 무력감, 자살충동, 우울증 등 등 부정적 심리적 영향을 끼치며, 우리 사회에는 인간의 존엄성 부정, 민주주의 왜곡과 부정, 사회적 통합 방해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부터 공동으로 혐오표현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차별 판단 지침」(2008년)

7 외국인은 범죄위험이 높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장애인은 불쌍하다, 여성은 관리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자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동성애자는 HIV/AIDS 의 주범이다, 껌등이 ××, 똥남아 짹개, ×신, 애자, 맘충, 똥꼬충, 호모××, 동성애는 더럽다 등.

8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에게) 바퀴벌레 조선인을 물어내자!, 정부는 즉시 난민들을 모두 추방하라, 장애인은 집에나 있어라, 우리 둑네 장애인 학교 절대반대, 삼일한(여성은 삼일에 한 대씩 맞아야 한다),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법을 알려주마, 동성애 아웃 동성애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등

9 국가인권위원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2020년)



사례 1 |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A고등학교는 연말에 특정대학 합격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학교 담벼락에 게시하였다.



해설

학교가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별주의를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성적이나 진학 학교에 따른 차별문화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게시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12. 11. 26.)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부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학별 차별문화를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각급 학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행위 자체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전국 중등학교장들에게 학별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례 2 | 남녀 출석번호 부여 차별

A초등학교는 학생에게 출석부에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50번부터 부여하였다.



해설

과거 학교 운영방법 중에 학생에게 출석부상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9. 28.자 05진차517 결정[초등학교 출석부상 번호 부여 시 차별]에서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 3 | 여학생 교복바지 선택권 미부여

A고등학교는 여학생에게 교복 치마와 바지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학생에게 교복 치마 이외 바지 착용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 행위이므로 학생에게 바지교복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2003. 11. 24.)

자라나는 세대에게 양성평등의식을 심어줘야 할 학교에서 여학생에게 교복으로 치마를 입도록 학교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치마를 입는 것이 여성답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관행적이고 전근대적 의식을 반영한다.

이는 여학생의 태도를 규제하게 되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여러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 개성에 따라 치마와 바지 중에서 선택하여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양성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에도 부합하므로, 시·도교육청에 학교규칙 개선을 권고한다.



사례 4 | 성적만을 기준으로 방송(EBS ○○퀴즈) 참여자격 부여

A고등학교는 EBS로부터 ○○퀴즈 참여(△△지역예심) 요청을 받은 뒤,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명 학생을 예심참가자로 선발해 EBS에 통보하였다.



해설

상식, 지식 등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종합적 사고와 분석력, 창의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퀴즈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면 누구든지 예심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성적만을 유일한 심사기준으로 적용하여 예심참여 학생을 선정한 것은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열등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예심참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참여희망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방안(예를 들어 교내 상식지식테스트, 학생의견수렴 등) 등으로 차별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례 5 | 출석번호 키순서로 비공식 부여

A초등학교 2학년 0반은 학생에게 출석번호를 가나다순번호(공식번호)와 키번호(비공식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이 학교는 거의 모든 반에서 공식적인 번호와 비공식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관행이 있다.



해설

불합리한 초등학교 키번호 부여는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권리, 책임,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교육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치를 지양해야 된다.

헌법·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승인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하여 성별, 무능력,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례 6 | 학생만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에 따른 차별

A학교 교사들은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전용이고,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이용쿠폰'을 발급해주고 있다.



해설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배경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장애인 이외 비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소위 '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장애인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동편의에 대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이동약자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교가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이용을 제한하는 것 역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교사들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 없이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7 |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적절 발언

A초등학교 담임교사 B는 수업시간에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차이나"라고 부른 적이 있고, 이를 본 학급 학생들이 "선생님 여자 차이나도 있어요. 000도 차이나예요."라고 하자, "000어린이도 차이나였구나."라고 말했다.



해설

초등학교 시기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모방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뤄질 수 있어 이 시기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을 때 학생들 또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자칫 차별에 대한 인식이 내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사사례

- 여학생의 몸무게나 자세 등을 지적하거나 외모에 비해 행동이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식으로 발언
- 생리결석을 한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반만 여자고, 다른 반 애들은 남자나"는 취지의 발언
-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 집단 내 소통이나 서로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의 발언



사례 8 | 특정종교 편견에 의한 혐오 발언 및 성희롱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시간에, 이슬람 문화를 설명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 해서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여학생의 치마를 미니스커트로 비유를 하며 “요즘 학생들의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 했다.



해설

이슬람의 복장은 “이슬람에서는 외출이나, 성원에서의 예배시 타인을 방해하거나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해당 손, 발, 얼굴을 제외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는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당 종교인은 주장하는 등 ‘성적 충동’과 관련이 없다. 그런데, B교사는 부정확한 사실로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포함하여 교육을 하였다. 이는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로 비유하면서 한 발언은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 하므로, B교사의 잘못된 성관념에 따른 언어적 성희롱으로 보인다.



사례 9 | 고등학교 심화반 운영

A고등학교는 심화반을 성적순으로 40명을 선발한 후 그들만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선발 후엔 따른 면학실에서 야간자율학습과 아침 자습을 하게 합니다. 아침 자습은 이들만 신청을 받고 가능합니다, 또한 아침 자습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교내, 교외 프로그램 신청, 선발에서 심화반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심화반에 혜택이 주어지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은 심화반이라 부릅니다.



해설

평등은 교육, 신분제나 절대 권력, 사회적 편견 등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 기회균등, 능력과 특성에 따른 대우 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학생은 [헌법] 제1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에 A고등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사례 10 | 중학교 학교구성원 차별

A중학교는 학생들이 등교시 후문 불가로 500m를 돌아서 정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으며 일부 교직원은 후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다.



해설

차별은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그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직접차별)를 의미한다.

A중학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정문으로 등교를 하고 있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2 폭력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폭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1) 언어 폭력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인격권은 유래한다.¹⁰

인격권은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격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격적 가치 침해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받은 개인은 분노, 모욕,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구체적으로 각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모욕’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협박’은 신체 등에 해를 끼치는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¹¹

10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

1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2년)



사례 1 | 수업 중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언어폭력

A교사는 수업 중 즐거나 수업내용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학생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한 뒤 ‘쓸모 없는 XX’,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등의 발언을 하였다. B학생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쓸모없는 취급을 받고 부모님까지 욕되게 해서 창피했다고 주장했다.



해설

수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학교규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 및 학생지도권의 정당한 행사이고, 학생은 이러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들 앞에서 올바른 언어사용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 등의 언어를 사용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수업시간 등 공개 장소에서 공연히 행사된 언어적 모욕은 인권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사례 2 | 비속어 욕설 사용

A고등학교 학생생활부장인 B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새끼”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평소 수업 중에도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자주 하는데, 일부 학생들은 교사의 욕설을 성대모사하기도 해서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해설

‘새끼’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짐승’을 이르는 말로 비하적 의미가 충분해 욕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교사의 이러한 발언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언어폭력으로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와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욕설을 들은 학생은 모욕감, 수치심, 분노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사례 3 | 남교사가 여학생에게 엄마, 엄마친구 소개 등 농담

A고등학교 B교사(남성)는 학생 C(여성)에게 “엄마 친구들 소개해달라”, “학교 선생님들이랑 너희 어머니랑 어머니 친구들이랑 너희 가게 가서 술마셔야겠다”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학생 D(여성)에게 “엄마 몇 살이냐”, “엄마 소개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해설

남성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에게 ‘여성 소개’를 언급하는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 말을 들은 여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학생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 친구들이 그 대상이 된다면, 더욱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술을 먹는다’는 발언 역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B교사의 발언은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에 해당되어, 피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사례 4 | 공개적으로 보호자의 사과요구

A초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C보호자와 의견이 달랐다. C보호자는 B교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고, 다음날 교실에서 B교사는 C보호자의 자녀와 학생들에게 “난 지금 이 순간부터 00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하지 않겠다. 단, 00의 어머니(C보호자)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실 뒤편의 게시판의 생활지도 관련 프로그램 게시물 7개를 떼어냈다.



해설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보호자와 교사의 의견(견해)이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교사가 보호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행위는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학생지도 프로그램과 관련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꼭 공개적으로 C보호자의 주장을 들어 학생들에게 동의 또는 통보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보호자의 자녀(피해자)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보호자의 자녀가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보호자의 사과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는데, 보호자의 자녀가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모욕감과 수치심이 상당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과 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교실 뒤편의 게시판의 게시물을 떼어내는 행위는 그 폭력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만든 행위로 보인다.

그러므로, B교사는 학생들에게 모욕감, 수치심 등을 주어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격권 침해)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 5 | 면담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공격

수행평가 중 실시된 ‘동료평가’ 점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담당교사에게 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담당교사는 자녀와 조원들을 개별 면담 해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놓고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4명의 학생들이 자녀에게 일방적인 자신들의 입장장을 얘기해 자녀가 무력감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학생들이 자녀에게 부여한 점수의 근거, 자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교사는 다시 5명의 조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면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는 또 다시 다른 4명의 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도 다른 학생들의 발언에 동조해 함께 웃는 등 자녀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해설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교사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특히 동료평가는 모둠 구성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구성원을 모아 면담을 진행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1차 면담 이후 개별 면담까지 진행하였지만 구성원들 스스로 해결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신청인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서로 이해가 있었다면 풀고 이해하여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상황은 의견이 상반되는 구성원 간 비율이 엇비슷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거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피해자와 나머지 구성원 4명의 극명한 대립이어서 균형 있는 대화나 토론이 어렵다는 점은 피신청인 역시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물론,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방조를 하거나 피해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학생들에게 동조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사가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서 본인을 적극 방어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한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다른 4명의 학생들이 돌아가며 피해자의 동료평가 점수를 왜 2점 밖에 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은 홀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거나 해결책이라고는 도저히 느껴지지 않는 무력한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신청인의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과 위축감 등을 갖도록 하는 상황을 제공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사례 6 |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언어 사용

교사가 수업시간에 “쌍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들”의 욕설과 “호로새끼, 지랄, 염병하네”와 같은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였고, 몇몇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을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흡연하는 학생으로 단정 짓고, 정신병원에 가게 만들 수도 있다고 공공연하게 위협, 협박하였다. 또한, 교사는 위와 같은 욕설과 비속어를 교직에 재직하는 동안 학기 초마다 줄곧 수업 시간에 사용하였다.



해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폭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학생을 학교 규칙에 따라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과 학생 지도권의 정당한 행사이고,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들 앞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 등의 언어를 사용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 행위이다. 게다가 수업 시간 등 공개장소에서 공연히 행사된 언어적 모욕은 인권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금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습관적으로 욕설을 포함한 비교육적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며, 피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상시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한다. 피해 학생들이 인격을 형성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고, 학교 교육에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중학생인 점을 고려할 때, 교사의 언행이 피해 학생의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학교와 다른 교사와의 신뢰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피신청인의 학생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위중하다고 판단한다.

2) 체벌(간접, 직접체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¹²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체벌은 금지된다.

체벌이란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직접체벌과 간접체벌로 나눌 수 있다.¹³

- ① 직접체벌은 신체의 일부(손, 주먹, 발, 머리 등)나 물건(회초리, 출석부, 대걸레자루, 야구방망이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간접체벌은 기합(무릎 끓기, 팔 들기, 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의자 들기, 오리걸음, 토끼뜀 뛰기, 선착순 달리기 등)과 같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지시, 명령 등을 통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을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이라고 정의하고, 체벌은 모두 모욕적이지만, 아동을 폄하, 모욕, 경시, 조롱하거나 겁주거나 희생양으로 삼는 비 물리적 형태의 벌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육체적 처벌의 사용이 아동 고유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가족, 학교 및 기타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거나 용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처벌을 근절하는 것은, 사회내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체벌을 금지하는 것, 즉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벌을 부정하는 것이, 아동을 올바른 행동으로 이끄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¹⁴

¹²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⑥ 학교의 장은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 18.>

¹³ 체벌을 간접체벌과 직접체벌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체벌은 ‘신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에서 ‘신체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이다. 즉, 간접으로 나누는 것은 체벌을 한 당사자의 행위에 따른 구분이어 가해자의 입장에서 용어를 정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체벌은 ‘체벌을 당한 피해자가 신체에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성립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로 체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 기술한다.

¹⁴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General comment No. 8 (2006) :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 19: 28, para. 2 : and 37, inter alia).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벌이 신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체벌을 가하는 자에 대한 체벌 받는자의 복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학생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고, 체벌 대상자로 하여금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저해하거나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있다는 비교육적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¹⁵



사례 1 | 학생들에게 머리를 잡아 흔들도록 지시함

A초등학교 2학년 0반 담임 B교사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C학생이 D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C학생을 말렸다. 이 과정에서 C학생이 발버둥을 치면서 B교사의 뺨에 상처를 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B교사는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C학생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면서, 학급의 다른 학생들(과거 C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C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라고 하였으며, 몇몇 학생들이 차례로 C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해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C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하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체벌을 당한 C학생은 심한 수치심과 모욕 등을 느꼈을 것이 당연하므로 인격권도 침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B교사의 지시에 따라 C학생의 머리채를 잡았던 몇 명의 학생들과 이를 목격하였던 A초등학교 2학년 0반의 학생들도 B교사의 행위로 인하여 폭력에 노출되었으므로, 위 학급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침해한 것이다.

¹⁵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표명.



사례 2 | 일상적으로 직접체벌, 간접체벌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 교복을 안 입고 오는 경우, 체육복을 안 입은 경우, 체육복을 입고 하고하는 경우, 실내화를 신고 매점에 가는 경우, 흡연이 적발된 경우 등에, 테니스채와 당구큐대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손과 발로 학생들의 엉덩이나 얼굴 등을 때렸다.

또한,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온 학생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테니스채 손잡이를 입에 넣었다. 잔디공사를 새로 한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슬리퍼를 손에 끼고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게 하였으며, 점심시간에 먼저 밥을 먹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2 바퀴를 돌게 하였다.



해설

B교사가 테니스채와 당구큐대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테니스채 손잡이를 학생의 입에 넣은 행위는 직접체벌에 해당하며, 운동장을 기어서 돌게 하고 오리걸음으로 돌도록 한 행위는 간접체벌에 해당한다. 특히, 테니스채 손잡이를 학생의 입에 넣거나 슬리퍼를 끼고 네 손발로 운동장을 돌도록 한 행위는 학대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B교사는 “때려서라도 가르쳐 달라는 보호자들이 있어,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체벌하고 있으며, 학생이 원해서 때린 적도 있다”, “본인도 화가 나서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등, 체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체벌을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학생의 손에 슬리퍼를 신겨 네 손발로 기어 운동장을 돌게 한 행위, 흡연을 이유로 학생의 입에 테니스채 손잡이를 강제로 넣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각종 체벌의 범주를 훨씬 넘어 학대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현행법상 금지된 체벌이 보호자의 요청이나 교사 본인의 감정 등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므로, B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



사례 3 | 무릎 끓고 발바닥 체벌

A중학교 담임인 B교사는 학급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반 전체 학생들에게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끓게 한 후, 도구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해설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무릎을 끓게 한 B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모욕감과 수치심, 낮은 자존감을 느끼게 하는 간접체벌에 해당하며, 도구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강도 여부를 떠나 학생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직접체벌에 해당하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4 | 체육수업시간,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음을 허락함

A초등학교 B교사는 1교시와 3교시 체육수업시간 2시간 동안, C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운동장에서 햇볕 아래 의자에 앉아 있도록 하였다. 그 날 최고 온도는 섭씨 30도 가량이었다.



해설

B교사는 체육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은 스포츠클럽 리그전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운동장에서 경기 규칙 및 전술 공부를 한다.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위 규칙을 적용하여 C학생을 비롯한 7~8명의 학생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동장에 서 있게 하거나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게 하였다.

햇볕이 찔리는 운동장에 서 있게 하거나 의자에 앉아 있게 한 행위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 환경(햇볕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영향 또는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체벌에 해당된다.

또한, 학생들과 야외 수업을 하면서,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벌을 준 것은, 해당 학생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B교사는 C학생을 비롯한 7~8명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사례 5 | 빗자루로 영덩이 체벌

A고등학교 B교사는 학교를 무단이탈한 경우, 노트필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분리수거 후 교사 지시에 반해 손을 씻고 온 경우, 관련 학생들을 훈계하면서 빗자루로 각각 3~4대씩 영덩이를 체벌하였다.



해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8항은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사의 체벌은 교육적 효과보다는 정신적 상처를 냥고 학생이 폭력적 수단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B교사의 체벌은 직접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모욕감을, 목격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손상을 끼쳤을 우려가 있어 신체의 자유뿐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사례 6 | 책상 위에 무릎 끓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A고등학교 2학년 0반 담임 B교사는 학생들이 잘못을 하는 경우, 수시로 반 전체 학생들을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끓게 한 후, 학생들을 훈계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교과수업 중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로 밀게 한 후, 학생들에게 ‘어깨동무하고 3줄로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셋트(셋트당 30회 가량)하게 하였다.



해설

B교사가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비록 때리는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직접체벌에 해당한다.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무릎을 끓고 앉도록 한 것,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킨 것은, 학생들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고통과 수치심 등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간접체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B교사는 학생들에게 직·간접체벌을 하여,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사례 7 | 골프채를 들고 협박 등

A교사는 체육수업 중 국민체조를 하면서 B학생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C학생이 B학생의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어 B학생의 얼굴을 보고 웃었고, B학생도 다리를 오므려 C학생의 머리를 누르는 장난을 하였다.

A교사는 C학생이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이해해 모욕감을 느꼈고, 체육관 안에 있는 체육실로 불러 골프채를 들고 “야 이 새끼야”라고 한 뒤, 선도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골프채를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교감에게 상황을 보고하였다.



해설

당시 A교사가 B학생의 자세를 교정해주던 상황을 미루어보면 C학생이 장난을 한 대상이 B학생이었다고 해도 A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자신을 놀리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C학생에 대한 지도와 교육은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체육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학생을 불러 골프채를 들고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한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당시 골프채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욕설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례 8 벽을 보고 서있게 한 체벌

A교사는 중학교 담임교사다. A교사는 정숙과 면학 분위기에 관심이 많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매우 싫어한다. 수업 중에 떠들면 교실 뒤에서 뒤편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복도에서 뛰다 걸리는 학생은 그 자리에서 복도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 몇 분 정도 짧게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수업 초기에 걸려 한 시간 내내 벽을 보고 서 있던 적도 있다.



해설

학생에 대한 지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적인 지도는 수치심, 모욕감 등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이동하는 복도에서 있게 하거나, 학급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해도 학급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꾸짖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성찰을 위해 잠깐 동안 서 있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지만, 벽을 보고 서있기 등 이른바 '면벽지도'는 수단의 적절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면벽'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심문과정에서 고문의 기법으로 사용하던 이른바 '면벽수행'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기관에서는 지양해야 할 지도방법이며, 과도할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벌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복도나 교실에서 뛰는 행위나 소란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무조건 금지하는 것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의 학교가 지나치게 정숙과 질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 권위주의 시기 병영교육의 잔재의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좀 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례 9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1층 현관 등교지도 중에 학생이 명찰을 달지 않아,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을 열체크 카메라 뒤에 엎드리게 하고, 2학년 교무실에 가 있으라고 했으나 학생이 교무실에 가지 않았다. 약 2주 후 등교지도 중에 학생을 만나자 함께 교무실로 올라갔고, 학생을 엘리베이터 앞에 엎드리게 한 후 청테이프로 감은 도구(알루미늄 소재 대 걸레 자루를 반으로 접어 청테이프로 감음)로 엉덩이를 7회 체벌한 후, 40여 초 가량 학생의 역설을 잡고 이야기하였다.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여러 차례 체벌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고, 엎드려뻗쳐와 체벌을 한 공간은 학생과 교직원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로, 공개된 장소에서 폭력에 노출된 피해학생이 느꼈을 수치심, 모욕감, 분노감 등이 상당하였다고 보여져, 인격권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10 | 교사가 장애학생 스스로를 때리게 함

방과후 수업시간에 장애학생이 공격행동(도전적 행동)을 하자, 교사가 학생에게 본인의 얼굴을 수십여 회 때리게 하고, 다른 장애학생에게 해당 모습을 휴대전화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해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란, 학생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정, 학교 등으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등의 '폭력 예방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할 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복하도록 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본인을 때리게 한 행위는, 학생의 '폭력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교사가 맞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또 다른 학생들이 지켜도록 한 행위는,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교사가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3) 성폭력

성폭력은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동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포함한다.

학교 내 성희롱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性的)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가가 성립요건이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이므로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¹⁶ 그러므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이 문제가 된 경우, 가해자로 추정된 사람은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러한 불쾌감 등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 하므로 가해자의 의도는 성희롱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학생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언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거부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교사와 학생의 관계 특성에 따라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조건 등을 고려하면 분명하게 거부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발생한 상황적 맥락과 경위, 그 행위의 정도나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원치 않는 행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¹⁶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⁷¹⁸

①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쁘다며 꼭 껴안기, 헤드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교육/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치마길이 확인, 속옷 착용 확인 등),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격려를 한다는 평계로 머리나 등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 당겨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여성의 성적대상화(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17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8년)

18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매뉴얼」(2019년)

④ ‘**기타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성적 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사적 만남 요구 포함), 좋아 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보고 싶을 때마다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신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이혼할 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례 1 | ‘볼에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는 성희롱

A학생은 감기몸살로 보건실에 가기 위해 다음 수업 교과담당인 B교사에게 허락을 구하러 갔는데, B교사는 A학생에게 ‘볼에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A학생은 주변의 남학생들이 웃으며 속닥거리는 것 같아 창피했고 B교사와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다음 날부터 등교를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의도한 경우는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

교사가 이 사례와 같이 학생에게 뽀뽀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학교의 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등 관계법령과 교육부·교육청의 성희롱 사안 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하여야 하며 평등한 성문화 조성 등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례 2 | 여학생 체육복 지퍼내리기, 뺨 깨물음 등

A고등학교 B 체육교사(남성)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검사하면서, 여학생들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여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같이 돌았다. 여학생이 잘못해서 학생부실에 오면, “뽀뽀하면 봐줄게”라는 말을 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때렸다.



해설

그리고, B교사는 술을 1~2잔 마신 상태에서, 야간자율학습시간에 C학생(여학생)을 학생부실로 불러 30분 가량 1:1 상담을 하면서, C학생의 얼굴(광대뼈 부분의 살)을 살짝 깨물었다. 학생의 얼굴에 자신의 이 자국이 생기자, 놀라서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문질렀으며, 학생이 학생부실에서 나갈 때, 서 있는 학생을 두 팔로 끌어안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그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성적 함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하지 않았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외에도 보통의 합리적인 여성 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B교사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의(체육복) 목 부분의 지퍼를 내릴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 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남자 교사가 여자고등학생과 학교에서 손을 잡고 운동장을 돌고,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껴안은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고등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여 B교사의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에게 “뽀뽀하면 봐줄게”라고 말한 것은, 설령 이것이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성적인 농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런 말을 들은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언어적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엉덩이는 생식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고 신체의 민감한 부위이며, 그 부위를 타인이 만지거나 건드리는 경우,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남자 교사가 여자 고등학생을 지도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으로 보인다.

B교사는 여학생들의 손을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는데, B교사는 소화가 안 된다고 찾아온 학생들의 건강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B교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교사는 여학생과 야간 시간에 1:1 상담을 하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의 얼굴을 깨물고, 이 자국을 지우기 위해 학생의 얼굴을 자신의 손으로 문지르고, 학생을 껴안았다.

이는 성희롱의 범주를 넘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당시 상황을 보면 B교사가 학생의 볼을 깨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B교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상담을 하였으며, 셋째,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을 다시 껴안았고, 넷째, B교사가 평소에 예쁘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엉덩이를 자주 두드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교사의 위와 행위는 (남자)교사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을 학교에서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것이므로,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다.



사례 3 | 일상적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비하발언 등

A고등학교 B 체육교사는 수시로 학생들과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발언을 하였다.

- ① 체육수업 중 줄넘기 2단 뛰기를 가르치면서, 우선 한명을 나오라고 한 후, 학생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드는 형태로 '점프하는 느낌을 느껴라'하면서 시범(1차)을 보이고, 모두 줄넘기를 연습하라고 한 후, 돌아다니면서 잘 못하는 학생을 찍어서 시범과 같이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들어올렸다.
- ② 줄넘기수업을 하면서 줄넘기 매기(소지하는 방법, 가로매기)를 할 때, 어깨를 감싸고 안듯이(일종의 백허그 자세) 직접 해주었다.
- ③ 체육복 복장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상의 지퍼를 내렸다 올리는 행위를 하고, 상의 주머니, 하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 ④ 체육복 상의 팔목 부분에 손을 넣고 있던 학생을 발견하자, 체육복 팔 부위를 잡아 빼서 묶었다.
- ⑤ 배구 토스 자세를 연습하면서, 손을 쥔는 요령을 설명해주면서 손을 만졌고, 서브 자세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허리를 터치하면서 껴안듯이 하여 지도하였다.
- ⑥ 평소 학생들의 손(주물럭거리기, 톡톡치기, 만지기 등), 어깨(손 올리기, 어깨동무, 주무르기 등), 머리(헤드락, 머리카락 만지기 등), 얼굴(볼 만지기, 볼 꼬집기 등), 귓속말하기, 허리잡고 돌리기 등을 하였다.
- ⑦ 줄넘기를 잘 못하자 “너는 1급 애자다. 너 1급으로 임명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 ⑧ 인바디 측정시, 뚱뚱한 애를 보고 ‘저기 돼지 한 마리 올라가 있다’고 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를 할 때, 잘 못하자 ‘너는 튜브에 바람 빼고 시작해야 한다(웃 위 배를 짜르면서)’고 하고, 평소 친한 학생에게 ‘돼지 같은 놈’이라고 자주 농담처럼 이야기했다.
- ⑨ 이론 수업시간에 “일본 여자는 가슴만지는 거 싫어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 ⑩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을 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안전선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젊은 나이에 솔직히 비키니복 입은 여자들에게 눈길이 가서 많이 쳐다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해설

학생들은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와 발언에 대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났다”, “부담스럽고 보기 좋지 않다”, “조금 별로였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쾌했고, 그만 하였으면 좋겠는데 계속 언급하셔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몸을 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쾌함이 없지 않았다”, “해당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고 많이 불쾌했습니다”, “좀 저질이라고 생각했다”, “기분이 정말로 더러웠다”, “징그럽고 수치스러움”, “지켜보았던 학생들은 저게 뭐하는 것인지 하면서 황당한 상황이었다”고 당시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와 발언을 하였다면, 보통의 성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적 모욕감, 수치심, 불쾌함, 모멸감, 당황스러움 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B교사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간섭 또는 강요 없이 학생들 각각의 개인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불쾌하고 성적인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를 침해한 것이며,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 개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학생들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육체적성희롱 ①②③④⑤⑥, 언어적성희롱 ⑦⑧)

또한, 학생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B교사의 행위로 인해 학생들은 인격적 모멸감, 수치심, 불쾌함 등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인격권 침해 ⑦ 장애비하발언, ⑧ 외모비하발언)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되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으로 학생들의 성(性)적 자기결정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4 | 고등학교 교사(남성)의 학생(남성)들에 대한 부적절 행위

공개된 장소(교실, 복도 등)에서 성적이 기준점(40점) 이하인 학생과 공놀이 등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이른바 ‘아마존 물고기(학생의 허벅지 안쪽 성기 근처 부위를 꼬집는 체벌)’ 행위를 하고, 해당 체벌을 하는 이유는 “부모에게 그 부위를 쉽게 보여주기 어렵고,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공개된 장소(교실, 복도 등)에서 학생을 안거나 학생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학생을 무릎에 앉히거나 학생의 무릎에 앉는 행위와 학생을 안을 때 자기의 턱을 학생의 볼에 비비는 행위, 수업 시간에 학생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는 행위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야동 보느라 공부 안 하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성기 꽉 잡고 있어라.”, “고추가 어려?”, “성기가 빨개진 것” 등의 관련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해설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고,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 결정권(또는 자기 운명 결정권)’은 외부(국가권력 등)로부터 간섭 없이 개인의 생활 및 운명 등(사적 사항)과 관련하여 개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 또는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하게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말이나 행동을 강요하여 불쾌감이나 당혹감을 주는 경우, 타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결정권’에 포함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¹⁹에 따른 “성폭력”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등에 따른 “성희롱”²⁰을 말하고,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들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므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¹⁹ 형사법상 성(性)과 관련된 범죄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음.

²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이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따돌림

“따돌림”이란 “학교内外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²¹

학생들에게 교사가 지도를 하면서, 학생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을 하면서 놀리기, 빙정거리고 면박주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을 하게 된다면, 대상이 되는 학생은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사례 1 | 수업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A중학교 B교사는 약 두 달 동안, C학생의 학급 외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C학생이 학급 실장이 된 것은 담임선생님이 좋아해서 된 것이다’, ‘C학생의 담임교사가 C학생을 어떤 동아리에 넣으려고 다른 학생을 빼고 넣었다’는 등 C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B교사는 C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의 투표로 실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담임교사가 C학생을 실장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설령 B교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 개인 신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교사의 행위는, C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평가와 평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평가와 평판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C학생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B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B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²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사례 2 | 뒷담화를 이유로 따돌림 지시

초등학교 A교사는 학급 학생의 일기를 보고, B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본인의 수업진행 등에 관하여 불만(이하, '뒷담화'²²)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B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을 개별 면담하고, 각 학생에게 A4용지 1장을 나누어 주며, 뒷담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A교사는 수업을 하면서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마라'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뒷담화를 까는 애'가 B학생임을 모든 학생들이 알게 되었다. 또한, B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반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수업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고, B학생과 말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등 어울리자, 어울린 학생들을 불러서 혼을 냈다.



해설

교사는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규칙에 따른 방법, 즉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훈육·훈계를 하여야 한다. A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B학생과 놀지 말 것'을 지도, 지시하여 B학생을 따돌리도록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B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적절한 지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A교사는 B학생의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B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과 놀거나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런 행위가 담임교사의 직접적인 지도,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B학생과 놀거나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혼내므로써, 단순히 혼례 차원이 아닌 B학생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별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A교사는 B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불어 B학생과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학생들에게 B학생과 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요한 행위로 보이므로, 위 학급 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등 정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 학생들 모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A교사는 B학생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B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A교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는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할 것인지 여부(사과 혹은 반성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A교사가 B학생에게 강요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B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²² A교사가 B학생의 일기장을 통해 알게된 뒷담화 내용은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④ 레드 카드, 멜로우 카드를 만들어서 위반 사항이 있는 아이들을 손들고 서 있게 시키는데, 이런 거를 왜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점심시간도 빼앗는 게 싫다. ⑤ 작년에 담임을 했던 반의 학생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는데, 사람마다 학년마다 다 다른데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⑥ 급식검사하면서 우리들에게 급식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남기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는 것은 좀 이상하다. ⑦ 매일 우리들에게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공부에 도움 되지 않는 것 같다. ⑧ ○○○만 예뻐하는 것 같은데 짜증스럽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한, A교사는 B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B학생을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과 학교생활규칙 등에 따른 교사의 지도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A교사가 공개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에게 'B학생과 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B학생과 어울렸던 학생들을 혼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B학생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 불안감, 모멸감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B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례 3 | 따돌림 피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따돌림 확대

A초등학교 B보호자는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결해달라고 담임인 C교사에게 요청했다. C교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계 개선 지도를 하였다. 이로 인해 B보호자는 C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자녀에 대한 따돌림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사례의 경우 C교사는 피·가해 학생 간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B보호자가 명확히 따돌림 (학교폭력) 피해 해결을 호소하였지만 학교폭력 접수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폭력 예방 및 보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란, 학생이 직접적으로 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정, 학교 등으로부터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회복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교육청 등의 ‘폭력 예방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올 수 있다고 할 것이다.²³

그러므로, 학교 및 교육청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당했을 경우 회복하고,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교 폭력(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사 등은 신고의무가 있다.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²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²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²⁶ 등에 이러한 신고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법률에서 폭력과 관련해서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아동, 청소년, 학생 등)가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교육받는 학교 등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률로서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해를 조기 발견하고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²³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2020.11.23. 20직권00003. 결정.

²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²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학교장 또는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²⁶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 1 | 의원면직 처리로 인한 폭력 예방조치 미흡

A중학교는 기간제 교사인 B가 1학년 여학생을 학교 소체육실로 불러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매뉴얼에 따라 경찰 신고, 학생보호 조치 등을 취하였다. 사안을 인지한 당일 B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학교는 계약해지(의원면직) 처리하였다.



해설

A중학교의 기간제교사인 B의 계약해지(의원면직) 처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안 신고 후 당일 기간제 교사의 사직서를 받아 ‘의원면직’처리를 한 것은 일반 교사와 비교하여 정당한 업무 집행(일반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종 신원조회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최종 사직처리가 됨)으로 볼 수 없고, 둘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을 허락함으로써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해당 교사의 사직서에도 이 사유로 기재되어 있음)’로 사직한 것이 되므로 해당 교사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는 축소·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셋째, 교육청 기간제 인력풀 운영 계획에 따른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인력풀에 등록될 수 없어 다른 학교에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학교가 학생인권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폭력을 예방하는데 부적절한 처리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2 | 체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

A초등학교 B교사는 C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나무 매를 사용하여 종아리, 허벅지, 허리, 팔 부위를 체벌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권침해 여부를 다투는데, B교사의 행위에 대해 A 초등학교의 보호자 54명, 동료교사 12명이 각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C학생이 평소 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방해하는 행동이 빈번했기 때문에’,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방해한 행동들이 여러번 반복’, ‘평소 수시로 욕설을 하던 C학생으로 인해’, ‘그 학생의 욕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C학생의 욕설과 학습방해로 인하여’ 등과 같이,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해설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가 작성되는 과정은 교육공동체 안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다수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도록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장하며, 체벌을 금지하는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피해구제보다 가해교사의 구제에 동참하면서 피해학생을 고립시키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해당 폭력 행위를 옹호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의 탄원서 작성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

3 교육환경

「헌법」 제35조, 「교육기본법」 제27조, 「청소년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르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다. 학생은 각종 소음, 분진, 악취, 불량식품, 교통사고, 유해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은 양질의 충분한 도서와 도서관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실·복도·화장실 등 학교생활공간의 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탈의 및 휴게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냉·난방 시설의 적절한 운전을 통해 적정하게 실내온도를 유지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례 1 | 교직원 화장실 이용시 벌점 부과, 탈의실, 샤워실 미설치

학교내 화장실 등을 점검한 결과, 학교의 화장실은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벌점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탈의실과 샤워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교직원과 학생의 화장실을 분리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탈의 또는 샤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탈의, 샤워실 설치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대부분의 공용 화장실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한 이용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사례 2 | 한 여름 짐통처럼 더운 교실

A학생은 올해 여름이 유독 더운데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에어컨을 잘 틀어주지 않아 교실 안이 짐통처럼 덥다면서 최소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냉방을 해달라고 교육청에 호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고등학교 C교사는 영어실에서 영어수업중 학생들이 무더위로 인해(7월)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자, 무시하고 화를 냈다.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 땀을 흘리며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해설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부여된 학교의 의무이다.

학교는 학교시설의 노후문제나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현재 냉방시설의 한계와 예산문제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례 3 | 남녀 화장실 수, 면적 등의 문제

학교의 화장실 실태를 파악한 결과, 남녀공학의 경우 남녀 화장실의 수, 면적 등이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해설

학교는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적 특징, 사용 문화 등이 남성과 다르고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그래서 관련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시설(공연장, 극장, 공원,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이 해당)은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학생 수, 짧은 휴게시간, 학교에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 등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면,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라는 일반적인(현행 법적인) 기준보다, "여성화장실 수 1.5배 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급 교육시설(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 포함)에서 여자화장실 수가 남자화장실 수의 최소 1.5배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는 제외/ 예: 여자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등)



사례 4 | 책걸상 노후, 화장실내 소모품 미비치 등

A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상당 수의 학교에서 교실 내 노후 된 책걸상, 복도 넌슬립 미설치, 화장실의 악취 등의 청결 문제, 화장실 내 소모품(화장지, 비누 등) 미비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해설

학교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교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점검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대책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²⁷에는 별도의 "공중화장실 관리인"²⁸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 기숙사내 시설 환경과 CCTV 운영 등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기숙사 생활실의 경우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열쇠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고, 생활실 출입문에 유리창이 있어서 외부에서도 내부를 볼 수 있다. 생활실과 사물함을 관리자가 불시에 점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샤워실의 경우 공용공간이기는 하지만 샤워실 내 샤워 공간 분리 장치(샤워 커튼 등)가 없었다.

CCTV는 기숙사 외부와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기숙사 내부 생활실 복도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생활실과 샤워실 출입문을 비추는 경우도 있었다.



해설

기숙사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자기 주도 학습, 인성교육, 체력단련 등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인권 우호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숙사 방의 출입문 등 위와 같은 환경은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볼 수 없다.

2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방에서는 생활과 관련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유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예, 옷을 갈아 입는 경우, 누워 있는 경우, 잠을 자는 경우 등이 복도를 지나가는 타인에게 모두 노출됨)로 이어질 수 있다. 설령 방에 학생이 입실해 있는지 여부, 전등의 소등 여부 등 간략하게라도 방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명 유리가 아니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불투명 유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샤워실의 경우 공용으로 설치된 학교가 대다수인데, 샤워실 내부 구조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개별 샤워 공간 분리-샤워 커튼 등)가 되지 않는 환경으로 보인다.

기숙사 내부에 CCTV 설치시, 설치 여부나 설치장소의 결정에 있어 입사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숙사의 방과 샤워실 출입구 등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으므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절한 방법과 절차,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숙사 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과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6 | 교사용, 학생용 화장실 차별적 화장지 비치

학교는 화장실을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교사용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학생용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화장지를 구비해 사용하거나, 학년실, 교무실 등에서 화장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화장지를 비치했는데, 변기가 막히는 장난이 많아서 그 이후로 없앴다고 들었다.



해설

학생용이건 교사용이건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는 것은 기본적 복지권에 해당한다. 화장지 낭비나 변기 막힘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화장지의 비치 여부가 곧바로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화장실 휴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휴지 지급량을 조절하거나 학생들과 토론하고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적 유도에 기초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화장실의 화장지 소비에 대한 실험 결과²⁹에서도 화장지 소비와 관련한 캠페인, 포스터, 표어 등을 통한 도덕적 유인 효과가 화장지 절감에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용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벗어나 결과적으로 학생의 복지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무실 등에서 지급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사용 화장실에는 화장지를 비치하고 학생용 화장실에는 비치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될 소지가 충분하다.

²⁹ 오영수, '공유자원 사용에 대한 유인 효과 비교 연구 - 고등학교 화장실의 화장지 소비에 대한 실험 결과',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 23권1호, 2016년

4 징계 등 절차

「헌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등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위 원리에 따라 적절한 절차,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거나, 교직, 학교생활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되므로, 어떤 일로 자신이 징계를 받는지, 징계를 받는 기준은 어떠한지, 징계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진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 조치가 결정되면 결정된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는 무척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이 잘못하여 징계 조치를 위한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도위원회 개최 사유, 개최 일시·장소, 당사자가 참석하여 진술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가급적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로 서면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연락을 통해 꼭 직접 당사자와 연락을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민원 상당수는, 학생이 어떤 행위를 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인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어떤 사안인지 안내받지 못하고 선도위원회가 진행되어 결국 퇴학 처분되었다거나, 선도위원회 일시나 장소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경우가 이와 관련이 있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이야기를 한정 없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만한 적정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서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형식적으로 참석만 시켰지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민원도 상당수 존재한다.

선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평소 징계 대상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해당 학생에 대한 일정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위원들은 해당사건을 심의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원회 결정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원회 구성 때문에,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한다. 해당 조치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충분히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참조하여 안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하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징계 관련 절차에서 해당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중점을 두는 것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공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징계를 받은 학생의 이름이나 학년, 반 등과 같이 어떤 학생인지 게시 내용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은 학생의 개인정보나 명예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행위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로 내려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게시를 하더라도, 간략한 사안의 내용과 조치 정도만 게시하고, 게시내용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인적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사례 1 | 선도처분을 앞둔 학생에게 전학 권유

A고등학교 B교사는 학교규칙을 위반한 C학생의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교육환경의 변화를 위해 전학을 권유하였는데, C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의사 존중과정 없이 선도위원회를 회피하도록 B교사가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설

학생의 징계 등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교원은 적정한 시기에 학생의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B교사의 주장 등 조사내용을 참고할 때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권유'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선도위원회를 앞둔 학생이나 보호자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사례 2 | 다음 날 선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갑작스러운 통보

A고등학교 B교사는 C학생 보호자에게 전화로 '내일 오후에 C학생 관련 선도위원회가 열리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참석하세요.'라고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다. C학생 보호자는 자녀가 어떤 이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건지, 이렇게 급하게 개최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당황했다면서 어떻게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다.



해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사유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는지를 알려, 의견진술시 방어권과 항변권을 보장하였는지 등이 적정한 절차 이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주된 사항이 될 것이다.

사례의 경우 학교가 형식적으로는 담임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선도위원회 개최와 의견진술권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가 방어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하기에는 충분한 절차 이행 이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학교는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보호자가 학생을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참석 가능한 일자로 개최일을 조정하고 개최사유가 포함된 통지를 서면 등을 통하여 정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3 | 생활복 착용 적발시 해당 반 연대책임

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생활복(체육복 포함)을 착용한 상태로 등·하교하다가 적발되면 적발된 학생 수만큼의 날짜 동안, 적발된 학생이 속한 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책임(연좌제, 連坐制, Implicative system)은, 한 사람의 규칙(법률)위반 등을 특정 범위의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 제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방식은, 인격적 존재인 학생의 인격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 학교에서 연대책임제를 실시한 이유는, 학생회 임원이 제안하여 학생회의로 결정한 것으로, 학생차지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승인하였다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학생회의로 결정한 사항이더라도 인권 침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학교가 검토하고 적절할 지도를 하였어야 한다.



사례 4 | 학급규칙으로 정한 지각 벌금

A고등학교 ○학년 ○반 학생들은 학급규칙으로 1주일 동안 지각한 횟수가 1~5회일 때 봄주기, 늦은 시간만큼 엎드리기, (횟수에 따라) 3,000원, 6,000원, 10,000원을 내기로 정하고, 지각비를 걷었다. 담임교사와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의사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도를 하지 않았다.



해설

지각비 형태의 지도는 학급회의 등으로 자치적으로 결정한 것일지라도,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의 벌금과 같은 금전적 처벌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각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적 지도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도 훈계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선도절차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례 5 | 선도부의 임의 벌점과 욕설 등

A학교는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선도부'를 운영하고 있다. 선도부가 교문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등을 검사해 벌점을 주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선도부가 학교를 돌면서 학생들을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다.



해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 징계 및 지도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 및 지도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것은 교사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한 일체의 활동은 교사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학생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교문지도, 교내·외 순회 점검 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교육과 학생 관리 성격의 활동을 보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생선도부의 검사나 지도는 근거가 없는 임의적 활동이므로 금지하여야 하며, 학생선도부에게 벌점 부여 권한 등을 주는 것은 '정당한 징계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학생들이 학생회 등이 생활개선을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례 6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 수업배제

A고등학교는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 2명을 피해학생과의 분리 목적으로 방학기간 자율학습 기간에 소속 교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해설

A고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가해관련 학생 2명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조치 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하게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것이나, 전담기구 회의만 했을 뿐 학교장의 결재, 보호자 통지 등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생과 보호자의 알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사례 7 | 풍기문란, 학교 품위손상이 퇴학 이유

A고등학교는 학생 B와 C가 교제 중 임신을 하였고, 양가 부모가 합의하여 임신중단 수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학교는 두 학생에 대해 학교규칙에 따라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한 풍기문란’, ‘학교의 품의를 손상시킨 행위’를 근거로 퇴학 처분 징계를 하려고 한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방안 정책 권고’에서 청소년 미혼모에게도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 및 차별이 균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 중 임신을 징계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고 보았다.

교육부도 2013년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 관련 점검’에서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교규칙 개정’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임신, 이성교제를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학습권을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성교제는 단순하게 ‘사귀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연령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성교제 중 ‘성관계’ 또는 ‘임신’만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속단해서는 곤란하다.

학생 B와 C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C에게는 임신 중단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례 8 | 재입학 불허

A고등학교는 자퇴 후 재입학을 희망하는 B학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퇴기간 생활에 대해 다른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자퇴 후 재입학을 하는 것에 대해 허용한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며 재입학을 불허하였다.



해설

자퇴학생의 복귀는 학교장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복귀를 요청한 B학생의 소명기회 제공없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제보받은 행실을 근거로 재입학을 불허한 것은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은 학교규칙에 재입학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A고등학교 또한 재입학심의위원회에서 재입학 허가 근거에 대한 규칙이 없어 B학생의 재입학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 학생의 반성 여부와 제보받은 행실인데 이는 객관적인 판단근거로 볼 수 없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재입학 허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학교장 권한 남용이라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재입학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이나 규칙이 필요하다.

가.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사례 9 | 흡연 2회, 무단결과 누적으로 인한 퇴학**

A고등학교는 흡연 적발 시 출석정지, 2차례 적발 시 퇴학 처분할 수 있도록 학교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B학생은 흡연으로 미인정결석 20일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3회째 적발시 흡연과 미인정결석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해설

흡연으로 인한 퇴학 처분의 징계는 학생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교육적 접근과 의미가

다른 것으로 학생의 향후 계도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출결 관리는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출석일수 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흡연으로 미인정결석을 부과한 후, 출석일수를 퇴학의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사례 10 | 봉사로서 청소를 하도록 함**

이른바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경우에 ‘봉사’로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해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학교의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학교의 규칙과는 상관없이 임의대로(학생들은 교사의 기분에 따라 ‘봉사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학생들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다.

5 노동권

‘헌법’ 제32조에서는 ‘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노동3권’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8조의 2에서는 청소년 노동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홍보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일 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가진다.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노동권 또는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교육청들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유독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 학생들은 사농공상이라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전통 때문인지 화이트 컬러 직업군에 대해서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적은 반면 블루컬러 직업군에 대해서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훨씬 강하다. 노동은 덜 배우고 게으른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 저임금 일자리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는 노동자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도, 의사도, 교사는 물론 대기업의 사무직 직원들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이 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나라에서 이와 같은 노동에 대한 인식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학생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의 그릇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한 성인들의 인식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성인들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일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이야기하게끔 해야 한다.



사례 1 | 늦은 만큼 벌금을 매겨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제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학생은 학교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에 5분 정도 늦었는데, 편의점 사장은 늦은 만큼 벌금을 매겨 월급에서 감액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과도한 지각이나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으로 본래 근무해야 할 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 이행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본래 근로계약의 범위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지각을 이유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하였으므로 부당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한다.



사례 2 |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수습 적용

학생 두 명은 갈비집에서 일했다. 한 학생은 고기를 구웠고 다른 학생은 서빙을 했다. 사장이 3개월 일하면 수습으로 90%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100% 시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기 굽는 실에서 숯으로 고기를 직접 구웠다. 목장갑을 끼고 고기를 구웠는데 땀이 날 정도로 더웠고 화상 위험도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5조(최저임금액)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수습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례 3 | 주휴수당 미지급

식당에서 주말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3층에서 서빙을 한다. 1층 알바는 8명, 2층 알바는 4명, 3층 알바는 5명이다. 총 알바가 17명이다. 주방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알바 중 단 한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도 적어서 계속 근무할까 고민이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인정된다. 단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인정한다. 마지막 주에 개근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면 전주 주휴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례 4 | 아르바이트 중 일명 '꺾기'

식당에서 주 3일 3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저녁 9시 30분까지 근무인데 손님이 없으면 30분 일찍 퇴근하였다. 떡볶이 집에서 주말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다. 설거지, 배달주문, 떡볶밥, 배달준비, 음료를 혼자서 담당한다. 점장이 떡볶이를 만든다. 손님이 없으면 9시에 퇴근하라고 한다.



해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퇴근시켜서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주는 꼼수를 일명 '꺾기'라고 한다. 심지어 손님이 없을 땐 밖에 나가 쉬게 하고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찍 퇴근했거나 휴식을 취했는데 약속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사례 5 | 학생들이 교무실, 교장실까지 청소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생은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역할 중에 교무실 청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해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실과 복도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 예전에는 화장실까지도 학생이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소노동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청소를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훈련하는 교육적 목적이라는 주장과 학생에게 청소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양 쪽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학생에게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청소에 대한 검토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책임 원리'로 접근해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고 보고 있다.³⁰

³⁰ 헌법재판소 2004. 6. 24.자 2002헌가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자 2007헌바101 결정

이에 따르면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인 교실이나 복도 등을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 청소를 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등까지 학생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자기책임 원리'에 따라 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발달단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타당한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 소수학생 보호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절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빈곤한 가정의 학생, 장애가 있는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등과 같이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차별·폭력 등의 인권침해 상황에 놓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인도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소수 학생들에 대해 위와 같이 특별하게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해 일정 정도의 우선적 치우가 필요한데, 이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라고 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이나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학생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의 협조·협력 관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호자의 협조·협력은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 해소를 위한 별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 편의 제공 및 참여를 보장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빈곤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음식을 섭취해야 하는 경우나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채식주의 등의 사정을 고려한 급식의 제공도 새롭게 고민되어야 한다.



사례 1 | 장애학생 대상 비장애학생들의 괴롭힘

A학생과 B학생은 같은 반 친구인데, B학생은 발달장애가 있다. 같은 반의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기 이름표를 가지고 B학생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B학생이 대답하지 못하면 바보라고 놀리는 장난을 계속했다. 그러자 A학생의 보호자는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했다.



해설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인권침해도 다른 학생들이 겪는 인권침해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애학생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사소한 징후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 특성을 고려해 장애학생이 겪은 인권침해 내용, 피해 정도, 지속성 여부 등을 직접 또는 주변학생을 통해 확인하고 특수교사 등 교내 장애학생 담당부서(담당자)에 알려 정확한 판단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는 장애학생이 아니더라도 고통스러운 괴롭힘일 수 있다. 사안의 경위를 조사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장애학생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구성원에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례 2 | 보호자 동행 어려운 지체장애인 학생의 현장학습 참여 제한

A학교는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보호자가 현장 학습 보조 인력으로 동행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학교 도움반에 남는다’는 내용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A학교는 교내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원봉사 형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 설명하였다.



해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교육활동 참여를 제한, 배제하는 등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장애학생이 현장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조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장애학생의 현장학습 보조 인력은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복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격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가 설명한 이유는 장애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례 3 |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A학생은 발달장애가 있으며,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A학생의 공격적인 행동을 담임교사가 제지하기 여려워 사회복무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지하려고 손을 잡는 순간 A학생이 사회복무요원의 어깨를 물어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다. 학교는 A학생에 대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출석정지 10일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해설

학생이 교사나 이를 보조하는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공격적인 행위를 하였다면 학교규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학생이 발달장애로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자·타해를 하는 등 이른바 '도전적 행동'이라 불리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성격과 성향', '정신과적인 문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등 "장애로 인한 기질적 특성"으로 분석된다.

A학생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은 발달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으로 이해되므로, 이를 고려한 처분을 고민하지 않고 일반적인 징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은 '소수자 학생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



사례 4 | 장애 학생에 대한 수업 배제

통합학급 담임교사가 공개수업이 있는 날 특수교육 실무사가 병가로 인해 부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 중증의 자녀를 특수학급 교실에 있도록 하는 등 수업에서 배제하였다.



해설

피신청인이 피해자들을 통합학급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특수학급에 있도록 한 것은 이날 피해자들의 수업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실무사가 병가로 부재중이었고, 특수교사가 자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제안을 고민 없이 수용한 결과이다. 피신청인은 특수교사의 제안이 피해자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도전행동을 보였거나 통합학급으로 이동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특수교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특수교육 실무사의 지원 없이 수업 참여 자체가 불가능 한지가 검토되었어야 하며, 공개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다른 방법이나 인력은 없는지 등에 대해 학교 측에 요청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검토나 논의 없이 특수교사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공개수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개수업 당시 피신청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학습할 권리'가 침해되었으며, 그리고 피신청인의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1 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학습권은 이에 포함되므로 학생은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만약 학습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에 대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시켜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시킴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한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³¹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가 학습권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유엔에서는 학습권의 4대 요소(4A)로서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용성(Adaptab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가용성은 교육기관이 이용 가능한 거리나 범위 내에 존재하여야 함을, 접근성은 차별 없는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장벽 등을 제거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용성은 학습의 형태나 내용, 시간이나 양 등이 학생이 육체적·정신적·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어야 함을, 적용성은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이 조정되어야 함을 위미한다.³²

학교에서 학습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교사 또는 교장이 임의로 교육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교내 체육부의 경기에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강제로 응원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능력과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과제 또는 수업을 하는 경우, 생활지도 등을 이유로 수업시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다.

³¹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결정.

³²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12년)



사례 1 |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로 인한 정신질환 발병과 전학

A고등학교 B학생은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체벌을 당해 학교생활을 힘들어 했고, 보호자도 이를 알고 담임교사에게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교사들의 체벌은 계속되었고 학생은 정신질환이 생겼다. 이후 학생은 교사의 체벌을 이유로 학교환경 전환 대상이 되어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해설

A고등학교 교사들은 나무주걱이나 다른 도구(지시봉, 조릿대나무 등)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허벅지와 무릎 뒷부분을 때리거나, 손을 사용하여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였다. A고등학교 교사들의 체벌은 일상이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누구를, 얼마나, 어느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없을 만큼, 학교에서 체벌은 일상이었다.

B학생의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B학생을 체벌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다. 2달 뒤, B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분노로 인한 우울장애'로 판단되었다. 이로 인해 B학생은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교사의 체벌이 B학생의 정신질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정신질환이 환경개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A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습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2 | 학교규칙 위반 조사를 이유로 수업 배제

A학생은 흡연 등 학교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고 학교 상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함을 이해시키고 긴급하게 선도나 교육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상담실이나 학생지도실 등 별도의 공간에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학교는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업 중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조사의 긴급성과 대체불가능성 등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학교장의 결재가 없다면 학습권 배제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학교장 결재에 근거한 수업배제 조사일지라도 조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시간과 방법으로의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

학생지도나 조사를 위해 수업배제가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교육청)

수업을 배제하고 학생지도 또는 조사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가?

가. 사안의 중대성 : 학교 규칙 위반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

나 사안의 긴급성

-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

- 대면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사안

적법한 수업배제 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가. 학생지도 계획 문서의 작성 :

목적, 수업배제의 긴급성과 필요성, 일정 및 방법, 향후 조치계획 등을 간단히 언급한 문서를 작성

나. 학교장의 사전 결재(또는 사후 승인결재)

* 유의점

- 수업배제를 통한 학생지도나 조사가 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보호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통지



사례 3 | 교사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역사 교육



해설

'교육기본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 개인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소신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념 또는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B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역사 교과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모습을 과거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그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³³이다. 그런 이유로, 역사 교과의 내용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진화하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도구들의 변화가 문명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문명은 국가를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A중학교 학생들은 B교사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A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³³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사회과 교육과정" 中



사례 4 |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A고등학교는 2학년 대상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보호자의 야간자율학습 비참여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B학생은 진로를 위해 방과 후 제빵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보호자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다.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해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다.



해설

학생의 보호자 역시 학교교육의 한 주체이므로 학교 내 학생의 교육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야간자율학습의 참여 여부는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므로 학교가 보호자의 의견만 채택하고 학생 의견을 무조건 배제한다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이 다른 경우 학생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학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5 | 교사의 체벌과 학생의 자퇴 사유

A고등학교 B학생은 교사들에게 일상적으로 체벌을 당해 힘들어 했고,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B 학생은 교사의 체벌, 청소년기의 혼란, 미래(학업)에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자퇴를 하였다.



해설

학교는 학생이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은 9년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이 정한 의무교육은 9년이지만, 고등학교 3년 또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교육한다는 점,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적·사회적 요구가 더 늘어나는 점 등으로 보아 고등학교 3년도 실질적으로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교육과정을 중단하는 것, 즉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는 것을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표현한다. 학교가 학생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학교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은 학생의 정상적인(일반적인)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는 '자퇴'의 사유가 일정 부분 교사의 체벌과 육설(폭언) 등이라면 이는 학생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고등학교 B학생이 자퇴를 하게 된 데에는 A고등학교 교사들의 일상적인 체벌이 일부 원인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B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례 6 | 학습선택권 침해

A고등학교는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3학년 학생 중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상담주간'을 운영하였다. 상담주간에는 학생생활기록부 검토,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였다. 상담 대상인 학생은 방과후에 전원 교실에 남도록 하였고,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담이 종료된 학생들은 귀가하도록 하였다.



해설

학교에서 진로와 진학을 위한 상담은 반드시 필요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수시전형에 응하고자 하는 학생들과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교육활동이라고 해도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나 기타 진로와 진학을 위한 개인적 활동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전형 대상이라고 해서 방과후에 전원 남도록 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상담이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진학을 위한 상담 활동이라고 해도 학생들과의 일정 협의를 통해 당일 상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가 남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전원이 남도록 하는 방식은 '학습선택권' 침해라고 판단한다.



사례 7 | 임의 귀가로 인한 학습권 침해

A교사는 B학생을 포함한 학생 3명이 전날부터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계속 떠들자 몇 차례 구두로 지도하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수업시간에도 3명이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아 점심 급식 시간 직전에 3명의 학생을 일으켜 세워 지도를 하였다. 3명 중, 2명의 학생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B학생은 건성으로 "네"라는 대답만 반복해 A교사가 "그럴 거면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그래도 B학생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갈 거야? 안 갈 거야?"라고 2회 정도 더 물었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확인 전화를 하라는 말을 하였다. "집에 가라."는 말은 강한 경고의 의미였을 뿐 실제로 귀가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후 점심 급식 시간이어서 서둘러 발열체크를 하였고, 다른 학생을 살피는 사이에 B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갔다. 다른 학생들은 점심 급식을 마치고 하교를 하였다.



해설

학교에서의 급식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신체의 형성을 유도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생활태도를 형성하는 단계인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중·고등 학교와 비교해 교육적 의미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급식은 그 자체가 학습할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또한 학교의 시정표에도 급식 이후에 종례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급식 시간까지가 정규교육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A교사는 귀가 발언이 강한 경고의 의미였을 뿐 실제로 귀가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귀가 관련 발언이 1회에 그치지 않았고, B학생에게 귀가 의사를 거듭 확인하였고, 보호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도록 요구한 것을 종합하면, 초등학생인 B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귀가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급식을 먹지 않고 귀가를 하도록 강요해 '학습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사례 8 | 교사의 부적절 행위

6학년인 피해학생들에게 교과목 연간진도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임의로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따랐서 만들게 하는 미술활동 위주로 수업을 했고, 학교가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교과목의 진도를 1/2 가량 진행하였다.



해설

교사는 상해를 이유로 수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특별한 사정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례 9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참여 관련 설문조사 대상으로 학생은 배제 등

A고등학교는 하계방학 중 기숙사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해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보호자 의견수렴 결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기숙사생 전원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해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공적 주체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인정(1990. 9. 10. 89헌마82)한 바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는 점에서 개별적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교육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당 사안은 A고등학교가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사례 10 | 학급 벌칙으로 야간 자율학습 강제

학급회의에서 학급규칙으로 정한 학급 등교 시간을 운영하면서, 학급 등교 시간 지각, 방과후 프로그램 등 무단 이탈을 한 학생들에 대해 역시 학급규칙으로 정한 소위 '깜지 쓰기' 벌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깜지를 쓰기 위해 자율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자율학습 시간에 남도록 한 사실이 있다.



해설

학생들이 학급규칙을 통해 마련한 벌칙에 따라 지각이나 방과후 등 무단이탈을 한 학생에게 자율학습 시간에 남아서 소위 '깜지'를 쓰도록 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은 자율학습을 강제할 목적이 아니라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정한 학급규칙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설령 학급규칙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마련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준이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잡는 것이 교사의 책무이다. 1분 지각에 대해 부여되는 '깜지'의 양은 적절한지, 수익자 부담으로 참여하는 방과후에 무단이탈을 했다고 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깜지'를 쓰기 위해 급식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남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정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을 주고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었는지가 검토되었어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 할 때, 학급회의에서 벌칙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도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학급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목적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 까지 남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학습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11 | 자기주도학습 참여 강제

기말고사 전날이라 정규수업이 종료된 이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계획에 없는 자율학습으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담임교사가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하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해설

정규수업 이후 진행된 학습활동은 일종의 '자기주도학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육청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에 따르면 자기주도학습을 "개방된 교실, 도서관 등에서 교사의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학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피해자들이 학습에 참여할지 여부는 스스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하교를 밝히는 이른바 '확인'이면 충분하고, '허락'이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교의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하교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례 12 | 행사 지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일반시민 행사(시험 등)에 학생을 보조원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행사 시간 지연으로 학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늦게 마치게 되었다.



해설

'학습권'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로 파생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12조(학습자),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경영자) 등을 근거로 볼 때, 학교에서 합리적 이유와 절차 없이 정규수업 시간에 발생한 수업결손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해야 하며,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교육과정 변경 시 이해 당사자인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례 13 | 교사의 수업시간을 자습시간을 운영 등

A고등학교 B교사는 평소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을 여러 차례 자습 시간으로 대체 운영하였다.



해설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의 자유를 말한다. 이때 교육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교사 개인의 자의적인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에 늦게 들어가거나 담당 수업 시간을 자습 시간으로 운영하였다면 이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교사가 가진 교육의 자유는 개인의 자의적인 재량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례 14 |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준비가 부실한 학생을 강제퇴장시킴

교과교사가 비대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준비가 부실하거나 수업태도가 불성실한 학생들을 강제로 퇴장시키고 재입장하지 못하게 하였다.



해설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가 있다.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을 퇴장시킨 행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대면 수업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사의 의무 이행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휴식권

휴식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³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문화 및 예술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휴식(rest), 여가(leisure), 놀이(play), 레크리에이션 활동(recreational activities)’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일하지 않는다(not working)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휴식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이완과 수면과 같은 기본적 필수 요소를 포함하고, 여가는 개인이 즐기는 것을 할 시간과 자유를 갖는다는 좀 더 넓은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선택한 광범위한 활동들(예: 스포츠, 예술, 공작, 과학적 혹은 원예 활동 등)을 일컬으며, 놀이는 반드시 특별한 규칙에 얹매일 필요가 없고 성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아동들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휴식(rest)과 여가(leisure)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 영양, 주거, 건강관리, 교육의 기초와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이나 참여에 대한 에너지와 동기 부여가 부족하게 되고, 육체적·정신적인 능력도 부족해 질 것”³⁵이라며, 휴식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휴식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학교의 장이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외부 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는 경우, 학교 수업 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예: 수업진도 등을 이유로 상당시간동안 학생들에게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 학생지도를 위해 반복적으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예: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쉬는 시간 마다 교무실 앞에 세워두는 경우) 등 학생 교육 및 생활에 꼭 필요한 휴식시간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34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칙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

35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General comment No. 17 (2013) :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arts (Article 31).



사례 1 | 초등학생, 쉬는 시간 5분 등

A초등학교의 B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 수업 진도를 이유로 쉬는 시간을 5분도 주지 않거나 2교시를 연달아 수업한 후 10분간 쉬는 시간을 주었다.



해설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례와 같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는 휴식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와 교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보장된 쉬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등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참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 대상 3차 권고(2011) 중에서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당사국의 노력과 아동의 놀이, 오락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사례 2 | 주말 동안의 기숙사 생활 일률적 강제

A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학력 향상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였다.



해설

학생에게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을 강제하여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말 동안의 기숙사 생활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 침해에 해당한다. 학교는 학생의 휴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주말 동안의 기숙사 생활은 학생과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사례 3 | 3일 동안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 박탈

A초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에게 생활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3일 동안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해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은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생활동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인정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휴식권을 제한하고, 그 제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휴식권 침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 또는 하루의 모든 쉬는 시간을 박탈하는 경우 등은 휴식권 침해로 볼 수 있다.

B교사는 학생들에게 생활 교육을 하려는 목적과 함께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을 징벌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쉬는 시간을 박탈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나 상황을 인정할 수 없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4 |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 앞에 학생을 세워둠

A중학교는 관행적으로 학생이 학교의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점심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오전, 오후)에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해설

학생들을 교무실 앞에 세워두고 반성하도록 하는 행위는 학생의 잘못을 모든 학생에게 노출시켜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1~2회가 아니라 하루 종일 쉬는 시간마다 그러한 행위를 시키는 것은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5 | 반복적 텃밭 관리 보조에 따른 휴식권 침해

텃밭관리 담당이었던 A교사는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일을 잘 도와주는 학생 B와 C에게 텃밭 관리 보조를 부탁하였다. 점심시간에 고추 지지대 설치, 잡초 제거, 씨 뿌리기와 모종 심기 등의 작업을 몇 차례 함께 하였고,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텃밭에 물을 주는 것도 부탁하였다.

텃밭 관리에 대해 ‘동의’나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강제하지 않았으며, 거절한 학생들도 있었다. 도움을 준 학생들에게는 ‘텀블러’ 등 기념품이나 ‘초코파이’ 등 간식을 별도로 보상하기도 하였다.



해설

가깝게 지내던 학생들을 특정해 텃밭 관리를 보조하도록 한 것이 교사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고 부탁의 차원이었고, 불러도 가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고, 활동에 대한 일정한 보상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활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과 연계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사제동행 노작활동,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의 일환이거나 학생들의 자율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텃밭관리 담당인 교사가 임의로 보조하도록 하는 활동은 교육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강압은 아니었다고 해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활동에 대한 ‘동의’나 ‘설명’이 따로 없었다는 점, 학생들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특정 학생들을 교사가 지명한 것이어서 일종의 ‘지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에 근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같은 학생들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점심시간에 누려야 할 휴식과 쉼이 텃밭 관리로 인해 방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 6 | 벌칙 누적에 따른 보충학습을 위해 점심시간 통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으쓱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면서, 벌점의 일종인 ‘머쓱’의 점수가 누적된 학생에 대해 타자연습, 명심보감 필사 등을 이유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10~15분의 보충지도를 하였다.



해설

피신청인이 점심시간 보충지도를 하게 된 사유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자인증제에 부진한 학생,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마라톤에 부진한 학생에 대한 독려였으며, 머쓱 점수가 누적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목적이었고, 그리기, 자유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자아 발달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타자인증제나 독서마라톤 등의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임의적인 교육활동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점심시간을 제한하는 보충지도의 방식을 선택하거나 머쓱 점수가 누적된 학생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명심보감 필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은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충지도가 시작된 2021. 9. 28.부터 종료가 된 12. 17.까지 무려 50일의 보충지도를 받아 평일을 기준으로 거의 매일 점심시간을 제한받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도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상황에 따라 보충지도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학기 내내 그런 지도를 받았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하고, 해당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점심시간을 제한받거나 행동을 통제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임의적인 교육활동의 성취 수준을 높이거나 생활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보장되어 있는 휴식권을 침해할 필요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10분의 휴식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점심시간까지 통제와 관리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자아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지도를 실시한 점은 비록 교육적 목적으로 생활교육의 일환이었다고 하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3 문화 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가 인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7(2013년)은 “아동의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면서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하고, 학교는 학생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교육,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사례 1 | 방과 후 활동에서 체육 등 예능활동 폐지

A학교는 학교 방과 후 활동에서 교과 보충을 위한 활동 외 체육이나 예능 관련 활동을 폐지하였다.



해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 활동에서 적정 수준의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학교의 본질적 역할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하면서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 보호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4 개성실현의 자유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일반적 행동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되고 있다. 여기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개성을 실현할 권리는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으로 학교생활에서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³⁶ 복장 역시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장, 두발(용의) 등을 규제하는 주요 이유로 ‘학생 신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칙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가 독점하게 되므로,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규칙을 정해야 한다.³⁷ 이렇게 생활규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개성실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학교는 학교의 상징물, 전통의 일환으로서 ‘교복’이라는 단체복을 채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과 보호자들이 교복착용을 원하고 있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며 학교구성원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교복의 착용은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에 대해 통제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학생의 안전, 건강 및 위생교육, 건전한 소비생활, 집단 생활의 예절 등을 안내하는 교육적인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교복이 통제적 장치나 학생다움을 규정하는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이유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교복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학생 본인 및 타인의 인권 침해하는 것과 상관성이 없기 때문이다.³⁸

³⁶ 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7.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³⁷ 국가인권위원회. 2002. 9. 9. ‘교육부 학교생활규칙(안)에 대한 의견’.

³⁸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20년) 24면.



사례 1 | 외투 착용에 대한 자유권 침해

최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 날씨가 추운데도 학교는 외투 착용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규칙으로 외투를 착용할 때 반드시 교복의 재킷을 착용하고 그 위에 입도록 하였으며, 실내에서는 외투를 착용할 수 없다. 색상도 교복 색깔에 어울리는 어두운 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압수해서 폐기하겠다고 한다.



해설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한 사항은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며, 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학교규칙이라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어 내용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 외투, 담요 등 착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충분하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실내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외투 등 착용을 금지하는 것, 학교의 규칙으로 실내에서 외투 등 착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해도 교문이나 건물 입구에서부터 벗도록 하는 것, 외투의 색상이나 디자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투를 재킷 안 또는 재킷 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학생의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규칙에 따른 지도라고 할지라도 날씨, 건강상태, 체형변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용모에 대한 지도는 단속이나 규제를 통한 체벌, 폭언,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규칙 준수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어야 하며, 복장 위반에 따른 임의적 압수·폐기는 사적 소유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



사례 2 | 교문지도 시 복장 일괄검사

A고등학교는 2주 동안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용의복장 검사하는 교문지도를 실시하였다. 학교는 위반 학생 대상 성찰지도와 선도위원회 회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기간에 130여 건의 위반 학생에게 성찰지도를 하였다. A고등학교의 교문지도는 학교규칙이 아닌 내부계획에 따른 것으로 학년부장교사들의 의견으로 내부계획을 수립하였다.



해설

학생이 자신의 용모와 복장을 결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헌법」 제 10조로부터 파생된 인격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해당한다.

교문지도를 통한 일괄 검사는 모든 학생이 검사 대상이 되고 자기검열을 수반하게 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구속하는 방식이므로 인격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문지도를 통한 전교생 일괄 검사는 A고등학교 학교규칙에 근거가 없고, 내부계획 수립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A고등학교의 학교규칙에 복장규정 위반 학생에 대한 다른 지도방법 (상담·훈계, 성찰교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지도방법이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사례 3 | 학생회 주도 용의복장 점검

A고등학교의 학생회 임원들은 1교시 수업시간 중에 교실 또는 복도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용의복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회가 관련 계획을 학생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결정의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중지 지도를 하지 않았다.



해설

학생에 대한 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교육기본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사로 지정하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학생회의 권한을 넘는 행위이다. B교사가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개성실현권 등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생각해보기

학생선도부 운영은 적절한 것인가?

해설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원(교사)에게 있다. 교원의 권한을 특정 학생 집단(이하, “학생선도부”³⁹) 또는 학생자치기구(학생회)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러한 권한을 법적 근거도 없이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 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선도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

또한,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과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 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학교는 학생선도부 운영으로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또는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 생활규칙’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명칭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³⁹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규율부’ ‘예절부’ ‘명예부’ ‘생활환경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바른생활부’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집단을 말함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 함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명예·신용 등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따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다.⁴⁰

그러므로, 학생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교육적인 목적에 한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학생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학생 본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학교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이 되는 것은 소지품검사, 고정식 명찰, 일기장 검사, 사적정보 열람 등이 있다.

먼저 소지품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①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⁴¹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

40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41 담배의 경우, 이를 피우기(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터, 성냥 등 불을 붙이는 도구가 필요하고, 라이터, 성냥 등의 불을 붙이는 도구는 학교에 화재 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어 소지품 검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칼, 망치, 송곳, 본드, 가스, 막약, 솔 등) 하지만, 학생이 화장품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경우, 화장품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소지품 검사의 사유가 될 수 없음. 하지만 학생생활규칙상 휴대금지 물품이 될 수는 있음.

여야 하며, ③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교내에서 명찰 착용은 단체생활 속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여 학교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 침해이다. 그러므로 명찰은 탈 부착식 혹은 목걸이식 카드, 고정식으로 하되 주머니 속에 넣고 뺄 수 있는 방식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⁴³

초등학교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일기검사는 인격적 존재로서 아동의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사·평가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⁴⁴

학생 개인의 사적 기록에 대한 열람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에 대한 열람이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대한 검사는 학생 본인의 실질적 동의 아래 매우 예외적인 상황(불법적인 행위를 했거나 타인의 인권을 위협·침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신고가 있을 시)에만 허용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사적인 관계를 파악한다거나 단순히 의심되는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⁴⁵



사례 1 | 특정학급 휴대전화 일괄수거

A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C교사는 한 학기 동안 휴대전화를 조례 때 일괄적으로 수거하고 종례 때 나눠주었다. A고등학교 학교규칙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수업 시간 사용을 교사 허가로 제한하고 있으나, 휴대전화 일괄수거 지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해설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관한 권리는 통신의 자유, 넓게 볼 때 사생활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학습권 보장 등 정당한 사유로 교육목적상 제한(지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학교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C교사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지도는 학교규칙의 범위를 벗어나 교사 개인이 자의적인 지도 방법이며,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도방법이라 할 수 있다.

⁴²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2015. 9. 24. 15학인00036 결정.

⁴³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 (2018년)

⁴⁴ 국가인권위원회 2005. 3. 25.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결정.

⁴⁵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 (2018년)



사례 2 | 월별 상·벌점 누계 공개

A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인 B교사는 생활지도실 앞 복도 게시판에 학생들의 월별 상·벌점 누계 현황을 공개하였다.



해설

생활지도부장인 B교사가 생활교육 차원에서 누적 벌점이 많은 학생들의 벌점 내역을 공개한 것은 해당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 | 도난을 이유로 일괄 소지품검사

A고등학교의 B교사는 학급티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모은 돈 30만 원이 분실되자 학생들을 교실 뒤로 나가도록 한 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책상과 가방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분실된 돈은 나오지는 않았음) B교사는 학생들에게 소지품 검사의 취지는 설명하였으나,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해설

B교사는 위와 같이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였는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의 첫 번째 요건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야 하는데, 소지품 검사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잃어버린 돈 30만 원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소지 가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두 번째 요건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학생들에게 명시적, 직접적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세 번째 요건은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다른 학생이 학생의 소지품을 모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어느 한 가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의 해당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B교사가 위와 같이 소지품을 검사한 이유는, 학생들이 모은 돈(학급비)을 잃어버려 이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만일 어떤 학생의 소지품에서 돈을 찾았다면, 그 학생은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개적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학생인권침해 외에 추가적인 피해도 예상할 수 있다.



사례 4 | 수업내용을 촬영해 학생지도에 활용

A초등학교의 B교사는 수업연구용 촬영장비로 촬영한 수업시간 녹화내용을 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금지를 권고하였다.

사례와 같은 연구용 촬영장비도 본래의 운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 공지 없이 교사가 임의로 수업 내용을 촬영하여 수업연구가 아닌 학생지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참고

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인권 침해(국가인권위원회, 2012. 2.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실 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해 교실 내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므로 교실 내 CCTV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사례 5 | 도난·분실물 확인을 위한 학년 전체 소지품 검사

A중학교 3학년 부장인 B교사와 담임교사들이 학생의 도난·분실물을 찾기 위해 학년 전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였다.



해설

소지품 검사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학생들의 사전 동의, 소지품 검사의 방법·장소 등의 최소화'라고 볼 수 있다. B교사와 담임교사가 실시한 일괄적인 소지품 검사는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6 | 상별점 내역 공개

A중학교 1학년 B, C반의 교실 게시판에 반 학생들의 상별점 내역이 게시되었다. 그리고 이 학교는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복도에 학생들의 별점 점수를 게시하였다.



해설

학생의 사적인 정보는 가족관계,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을 말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상별점 점수와 성적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해당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경우,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별점 누적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생활교육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A중학교가 민감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인의 별점을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은 해당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7 |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 살펴봄

A고등학교 B교사는, 학생들이 술을 마셨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입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잠금해제'하게 한 후, 휴대전화 내용을 열람하였다.



해설

사생활 침해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전화번호, 메시지, SNS 활동 내역, 사진, 동영상 등은 개인의 은밀한 영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게 하여 동의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 생활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8 | 소지품 압수에 대한 기준 제시 요구

A고등학생이 국민신문고에 “학교가 학생들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시하여줄 것”을 제안하였는데,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림을 그리는 수첩을 과학시간에 교사가 (과학시간에 영어단어를 외운다는 이유로) 빼앗아 갔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학교가 압수한 학생의 개인 물품은 돌려주어야 하며, 학생의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그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16조 제1항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물품은 사생활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자기 표현, 자기 발전, 자기 만족 등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개인 물품은 사회적으로 비난 또는 불법적인 경우가 아니면 제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먼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야 하며, 두 번째,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세 번째,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검사장소, 검사자,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 개인물품을 압수하는 경우는 수업 또는 생활 중 교사가 직접 발견하였거나,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 또는 강압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발견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생활규칙 등을 통해 학생 개인물품에 대한 소지·관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방법으로 생활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학생 개인물품의 소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학생의 개인물품은 학생의 개인 소유물로 학교가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을 때 소유관계, 관리 등의 문제가 있으며, 학생 인권(사생활의 자유)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개인물품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은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학생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제출, 압수 등)로든 학생 개인 물품은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학생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와 상담 후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은 아니지만 학교 규칙상 소지를 금지하는 물품인 경우, 또는 학교 규칙상 소지를 금지하는 물품은 아니지만 수업 시간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시간에 학생이 사용한 물품인 경우, 기타 교사가 부적절한 물품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과 상담 후 즉시 돌려주던지, 보호자와 상담 후 보호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 학교가 학생 개인의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 즉시 물품을 폐기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 개인 물품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즉시 돌려주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기한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⁴⁶하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의 개인 물품 소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⁴⁶ 기한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 학교 등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적절함



사례 9 | 교복에 박음질로 고정한 명찰

A학교 교복은 명찰이 박음질로 부착돼 있다. B학생은 이런 명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지 교육청에 문의하였다.



해설

사람의 이름, 즉 성명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본권이며, 어느 범위까지 혹은 누구에게까지 알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교복 위의 고정식 명찰은 원하지 않는 성명권의 노출을 야기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이름의 노출로 인해 범죄 피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고정식 명찰보다는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명찰 위치 주머니 위에 덮개 천을 만들어 학교 밖에선 덮개 천을 꺼내 이름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학생의 인권 보호에 적절할 것이다.



사례 10 | CCTV 불법 열람

A중학교는 학교 내 시설 무단침입한 학생들을 찾기 위해 여수명의 교사가 CCTV 자료를 복사·열람하여 해당 학생들을 징계에 회부하였다.



해설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규칙 제14조(처리의 제한)'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한 행위이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11 |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숙사 방을 검사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숙사 방을 검사하였다. 학생이 학교에 간 사이 학생의 옷장, 캐리어, 속옷 보관함, 기타 물품 보관함, 쓰레기통 등 수치심이 들만한 곳들을 모두 뒤적거리고 정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학생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벌써 여러 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설

일부 학교에서는 각 호실마다 '방장(실장)'을 두고 점호 및 점검, 청소 확인 등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각 호실을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각 호실 점검이 필요할 때는 사전 안내하고 같은 성(性)의 사감이 점검토록 권고하였다.

- 매주 순번을 통한 당번(책임)제 운영 방법 권장('점검'은 사감 업무)
- 각 호실마다 동 학년이 생활할 것을 권장

※ 여러 학년이 섞여 생활할 경우, 선후배 문화, 학교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같은 학년끼리 생활함으로서 학업과 휴식문화 등에 동질성 회복

또한 학교 기숙사 생활에 참여하는 학생수(규모)와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유무를 결정하거나 단위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6 정보에 관한 권리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및 디지털 정보혁명의 시기인 20세기 후반을 거쳐 현재는 정보사회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환경의 혁신적인 변화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여 강조되는 것이 ‘정보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보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중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관한 권리’는 정보 프라이버시권,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정보문화 향유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보 프라이버시권’(information privacy 또는 data privacy)이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이에 대한 통제의 문제이며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문제가 핵심을 이룬다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권, 동의 철회권, 정정 및 삭제요구권,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열람·확인 요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 접근권’(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의 자유 또는 알 권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정보접근권의 내용에는 국가나 행정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정보에 관한 권리’보장과 관련해서 ①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학생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가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공개된 정보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④ 학교는 학생 개인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사나 부모 등 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 및 삭제에 신중하여야 한다.⁴⁷ 등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7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 (2018년)



사례 1 | 휴대전화 학교 반입 및 소지 금지와 일괄수거

A초등학교는 교칙에 교내 휴대전화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B중학교는 교칙에 교육활동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고 시 되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설

A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의 안전한 사용 교육을 통해 최소한의 정보·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중학교의 일괄 수거 방식 또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학생·보호자·교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규칙을 개정하고, 학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 최소한의 정보·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 동의 절차 없이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집

A고등학교 1학년부 교사들은 학생의 가족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나 동의 절차 없이 학생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해설

학생과 그 가족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라도 학교를 통할하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이용에 앞서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정보주체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고등학교 1학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동의 절차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은 정보 수집·이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의 반환, 정보주체 대상 사실 관계와 조치계획에 대한 안내 등 학교장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사례 3 | 학생 징계사실 공표

A고등학교의 장은 학내 게시판에 ‘1학년 2반 ○○○ 학생은 교칙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에서 출석정지의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라는 형태로 징계사실을 공표하였다.



해설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학교 규칙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규칙과 이에 따른 지도·징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징계이행에 따른 담임교사 협조 등 관련 학생의 교육활동 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련 교사에게만 최소화하여 안내하고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이름을 익명처리를 하였을지라도 해당 학생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사례 4 | 학급 게시판에 학생 벌점 점수 공개

A초등학교 B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게시판에 벌점 현황판을 만들고 게시하여 학생들의 벌점 내용을 공개하였다. A초등학교는 생활평점제를 폐지한 교육청 소속 학교임에도 B교사 담임학급뿐 아니라 일부 학급도 생활 평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B교사가 학급 게시판에 학생들의 벌점 현황을 공개한 것은 징계 등에 관한 학생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A초등학교 소속 교육청이 생활평점제를 폐지하였음에도 A초등학교 일부 학급이 생활평점제를 실시한 것은 학교장의 관리소홀로 볼 수 있어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례 5 | 기숙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A고등학교는 전원 기숙형 학교이다.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곧 설문지를 배포하겠다. 동의와 비동의가 있는데, 핸드폰 압수에 대해 비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부모님 손을 잡고 기숙사를 나가라”고 했다.



해설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리며, 통화,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게임, SNS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사람들과 소통 또는 각종 정보를 얻는데 활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게임,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 여가시간을 보내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며, 지식 또는 교육에 활용하기도 한다. 현대 생활에 있어서 거의 모든 영역에 활용 가능할 만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며, 기숙사에서는 학생의 여가시간 대부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없다면 학생들은 타인과 소통, 정보취득,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의 부작용이 있다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생활 교육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휴대전화 소지 금지라는 정보의 접근 및 학생들의 사생활을 형성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제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을 막고, 학생들의 사생활 형성을 저해하는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숙형 학교에서 기숙사를 나가라’는 것은 ‘A고등학교를 다니지 마라’는 의미여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자기(운명)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4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1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이라 함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의미 한다”고 양심을 정의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는 ‘내면의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자기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⁴⁸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반성문이나 각서 등의 작성과 관련된 것이 많다. 반성문이나 각서, 서약서 등을 학생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지도하거나 설득할 수는 있지만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학생에게 반성문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학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부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적 학생지도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학기 초 관행적으로 각종 학생생활규칙 관련 사항을 나열 혹은 요약하여 제시한 후, ‘준수하지 않을 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전확인 절차나 사전 환기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약서가 아니라 ‘인지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⁴⁹

48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1997. 3. 27. 96헌가11 결정 등

49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2018년)



사례 1 | 일반고 배정 결과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

A지역 일부 중학교는 ‘평준화 지역 ○○학군에 지원하여 학군 내 배정(1단계) 시 끝 지망이 배정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배정방법 설명(안내) 청취확인서>에 학생·보호자 인적사항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해설

A지역 일부 중학교가 교육청의 변경 문서가 아닌 기존 문서 서식인 학교배정 설명청취서를 학생·보호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학생·보호자의 양심의 자유, 정당한 이의신청권, 개인정보 자기관리권 등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다. 관련 학교는 기존 제출받은 문서는 모두 폐기하고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등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사례 2 | 교칙위반에 대한 선도처분 감수 서약

A고등학교는 2월 말 신입생들에게 교칙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앞으로 …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칙 준수 서약서>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해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란 어떤 개인이 형성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발표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거나 개인의 사상 및 양심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서, 진술서 등의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 교칙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중 소극적 자유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하였다.⁵⁰

사례와 같이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의 선도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이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⁵⁰ 국가인권위원회, 2014.7. 13-진정-0519400 결정



사례 3 | 일기쓰기 강제 및 검사

A초등학교 B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일기를 쓰는 숙제를 내고 있다. 보호자 C의 자녀는 학기 초반에는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힘들어 했다가 1학기가 지나가고 B교사의 지도도 받으면서, 제법 요령도 터득하여 혼자서도 숙제를 잘 완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호자 C는 “국민신문고에 학교에서 일기장 제출 및 검사로 고통 받는다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고, 교육청이 공문으로 다음 주부터는 가정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알림장을 학교로부터 받았다.

물론 일기쓰기를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지만, 왜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없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설

일기 작성은 습관화, 생활반성, 쓰기능력의 향상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기란 개인의 하루 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 개인의 생각과 양심을 내용으로 하는 내면의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일기지도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학생의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적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게 일기지도를 받고 싶다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그리고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외 부가적인 승인에 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4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는 ①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② 종교를 믿지 않을 무종교의 자유와 ③ 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의미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① 신앙고백의 자유, ② 종교적 행사의 자유, ③ 종교교육의 자유, ④ 선교의 자유, 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내심영역으로서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⁵¹

종교교육의 자유에는 종교학교를 설립할 자유와 그러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가 포함되나,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教分離의 原則)⁵²에 따라 금지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⁵³은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규칙이다.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립학교(宗立學校)에서 종교 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석 등과 관련된 것이다.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종교 행사 참석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나,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경우, 학생이 그 종교과목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체과목을 마련하고 종교과목의 수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과목을 수강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 개인의 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경전이나 종교서적 읽기나 쓰기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경우, 학생회 부서에 종교 부를 두고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⁵⁴

51 헌법재판소. 2010. 6. 24. 2010헌마41 결정.

52 정교분리란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사원(寺院)과의 분리의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世俗的)·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일이자 국민의 신앙적·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는 종교 활동을 행하든가 특정의 종교단체를 지지해서는 안 되며 종교단체도 정치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출처 :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

53 제6조(교육의 종립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2007년)



사례 1 | 조회시간 전후 전교생에게 기도 강요

종립학교인 A고등학교의 학교장은 매주 전교생이 참석하는 조회 시작과 종료 전에 기도를 하면서 전교생에게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고, 때때로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지역에 가거나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해설

종립학교는 각 종교의 성격과 특징, 추구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이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도 종교교육 및 운영의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 역시 공교육 내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발학교가 아닌 경우) 학생들에게 종교과목의 수강이나 부수적 종교 활동을 강요하면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종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의 교육이나 종교 활동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비종교인이나 타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특정 종교 활동을 거부한 학생대상 학교의 징계조치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2 | 학생지도 시 종교관련 의식 실시, 이단 논쟁

A중학교 B교사는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식(기도)을 한 후 수업을 시작하였다. B교사는 자신이 담임 맡은 학급의 학생이 아프다고 하면 그 학생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냈다. 또한, C학생이 'B교사가 다니는 교회와 다른 종파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C학생을 상담하면서 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1시간가량 C학생과 종교적 논쟁을 하였다.



해설

B교사가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B교사의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하여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도 인정된다.

B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B교사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유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B교사가 아픈 학생들에게 기도를 한 행위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심지어 학교에서 C학생과 종교의 차이에 따른 이단논쟁을 하였던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教分離의 原則)을 규칙하고 있는 「교육 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C학생과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3 | 창의적 체험활동 종교 관련 내용만 운영

A학교는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한 종립학교로 매주 금요일 1교시를 종교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다. 종교수업은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시간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교실에 남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실의 불도 켜지 못하게 하고, 냉난방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요했는데, 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시정되었다.

문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모두 참여해야 하는데, 외부강사의 특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외부강사가 목사이거나 선교활동을 하는 대학생으로 대부분 신앙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배정 방식으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종립학교라 하더라도 선택권과 대체 프로그램이 주어져야 한다.⁵⁵ A학교는 금요일 1교시를 종교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교수업 시간에는 선택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특정 종교의 선교활동과 신앙 간증 등 특강으로 진행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종교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택권과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이다.

⁵⁵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3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사상, 의견을 공표하는 것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 검열,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의미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적극적인 자유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거나 전파하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도 포함된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명이나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수집하고 의사 표현을 한다면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다.⁵⁶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응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⁵⁷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데,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무제한·무조건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제한의 범위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한하여, 학교의 규칙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⁵⁶ 학생이 게시한 게시물의 표현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고 위해를 가할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학생에게 이유를 설명한 뒤, 수정 요구,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 (2018년))

⁵⁷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교내 집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엄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이에는 적극적으로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 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⁵⁸ 결사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교내외에서 모임을 구성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학교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법규와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를 학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단체인 경우, 사회 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모임의 결성,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집단적 행위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의 안전 위협, 위법 등을 충족하였는지 엄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제한해서는 안 된다.



사례 1 | 학생들의 서명운동에 대한 학교의 관리와 지도

A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는 교문 밖 200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A고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적정한 지도와 관리에 대해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학생들이 진행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관련 반대 서명운동은 「헌법」 제19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에 보장된 아동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학교장의 허가사항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 학교는 오히려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서명 강요 금지, 서명을 이유로 교과수업 활동 방해 금지 등 소극적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서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도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58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5헌바260 결정 등



사례 2 | 청소년 인권 관련 집회에 참여한 학생대상 징계

A학생은 거주 지역에서 개최된 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다. B고등학교는 이를 이유로 A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해설

학생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렇게 표명된 의견은 학생의 연령과 성숙도에 비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존중되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의 표현의 자유(집회, 결사의 자유)를 학교内外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과 학교규칙 개정을 권고하였다.

사례와 같이 학생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려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학생의 의견 표현의 기회 보장은 학교内外에 따라 달리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최대한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사례 3 | 세월호 리본을 달지 못하도록 함

A초등학교 담임교사 B는, 4월 중순경 학생들이 가지고 온 '세월호 리본'을 보고, 학생들에게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돌아가신 군인들은 추모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까지 추모할 필요가 없다.', '우리 반은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해설

사람은 누구나 사회의 어떤 사건과 현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으로서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다. 다만, 그것이 내심의 영역을 넘어 외부에 표현되거나 실현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교사 역시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내심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나, 교사가 개인의 관점을 외부로 표현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하여 '군인들의 죽음', '교통사고' 등과 비교하여 생각하는 것은 B교사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중 내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면서, 학생들에게 '리본을 달고 다니지 마라'고 한 것은 학생들의 행동을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압적(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했을 때)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의 인권(표현의 자유)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4 | 징계 부당성을 호소하는 학내 게시물 철거

A학생은 최근 B교사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B교사는 자신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황이다. B교사에 대한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학생은 A4 용지 크기의 출력물을 수십 장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학교는 게시물이 “학생회가 아니 학생 개인의 의견”,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 “허위사실 적시”라는 이유로 철거하였다.

이후 A학생의 주장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학생회가 학생회 명의의 대자보를 만들어 게시판에 부착하였지만 학교는 같은 이유로 철거하였다.



해설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혐오 표현이 아닌 이상 그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교의 규칙이나 학교-학생 간 합의를 통해 정한 방식이 있지 않다면 그 방식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의 표현은 학생회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도 존중되어야 한다.

학교는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이라고 하지만, 학교생활규칙에 게시물 부착과 관련한 규칙이 따로 없으며, 학생 측과 합의된 내용도 없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다. 또한, 게시물에 대한 반론 게시, 게시 기한의 제한 등 다른 가능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게시 즉시 철거나 다른 부착물로 가리는 방식으로 원천적 차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교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주장도 B교사의 징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당징계’라는 주장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록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이 난다고 해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4 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일상화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자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리⁵⁹이다.⁶⁰

학생자치활동은 기본적으로 학생자치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성적이나 징계여부, 교사의 추천 여부, 교내외 학생활동 등의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 자치 기구의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학생자치기구는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 선임, 각종 회의 소집 및 학생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학교 운영이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 등을 가진다.⁶¹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59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0 경기도교육청(20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61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20년)



사례 1 | 질병을 이유로 임원 입후보 제한

A고등학교 B교사는 담임학급 반장인 C학생이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하자, 질병(소아당뇨)을 이유로 ‘너는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고, 불가능한 일을 하다보면 죽을 수도 있으며, 그래도 학생회장에 출마한다면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결국 못 나오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해설

자치활동의 권리는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17조에 따라 보장하고 있다.

B교사가 질병을 이유로 C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은 C학생이 학급의 반장 직무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질병만을 이유로 C학생을 배제하려고 한 것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한, 이 발언의 이유가 학교규칙의 학생회 임원 입후보 자격제한 규칙에 근거가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취지에 벗어나 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사례 2 | 교사 추천서로 인해 학생회장 입후보 제한

A고등학교는 학교 규칙에 학생회장, 부회장 입후보 시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담임교사, 부장교사, 대의원 10명’ 모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학생 B는 부장교사가 추천을 거부하여 학생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였다.



해설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인 요구 조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학교선거 매뉴얼」을 통해 ‘30명 이상의 재학생 추천 또는 학급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도록 예시하고 있다.(담임 추천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 필요)



유사사례

C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칙에 학생회장 입후보 시 ‘진로상담부장,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의 추천과 교과 담임교사 5명,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3 | 상벌점을 이유로 한 입후보 제한

A고등학교는 학교생활규칙으로 직전 학기에 받은 벌점이 6점 이상이거나 교내봉사의 징계기록이 있는 경우 학생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설

고등학교에서 교내봉사활동 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생활규칙에 따라 학급 반장에서 해임되고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상실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⁶²



유사사례

B중학교는 직전 학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1학기 학급임원 당선을 무효로 하겠다고 하였다.



사례 4 | 담임교사가 학급 임원 지명하여 임명

A중학교 B교사는 담임을 하면서, 이전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학급임원 선거를 맡겨놓았더니 부적절한 학생이 선출되어 한 해 동안 너무 힘이 들었다는 이유로, 실장, 부실장을 학생들이 선출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하였다.



해설

학생은 학교의 간접 없이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학생이 학교운영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인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활동의 주체가 되는 자치조직은 학생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임원을 선출하도록 각급 학교에서 규칙하고 있다.

그러므로, B교사가 학급 실장, 부실장을 학생이 선출하지 않고 자신이 지명하여 임명한 것은, 해당 학급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⁶² 국가인권위원회 11-진정-0367600 결정, 2012.1.27.



사례 5 | 학생회장 선거를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

A고등학교의 B학생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한 등록 서류를 작성하였다. 등록서류에는 후보자 등록 원서(담임 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학년부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사와 재학생 100인 이상의 서명 추천(단, 재학생 2인 이상을 추천한 경우에는 그 추천자의 추천은 모두 무효로 한다.)을 받은 추천서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B학생은 담임과 학년부장 추천을 제외한 모든 등록서류를 작성하였는데, 담임교사인 C와 학생부장인 D교사는 B학생이 품행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다. B학생은 결국 시기에 맞춰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였다.



해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학교가 실시하는 각종 선거 역시 이 원칙에 따라야 함은 명백하다.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한 등록 서류는 학생 추천서, 보호자 동의서, 담임교사 추천서, 학년부장을 포함한 교사 3인 이상의 추천서이다. 그런데, 학생이 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보호자의 동의를 비롯한 교사들의 추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보호자와 담임교사, 학년부장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학생은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허가를 득해야하는 '허가제'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보호자 동의서와 담임교사, 학년부장을 포함한 교사 3인의 추천서는 학생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선거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폐지하고, 학생의 출마 사실을 알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면 보호자, 담임교사 등의 확인서(학년부장을 포함하는 교사 3인 이상의 확인서는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폐지가 바람직)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는 B학생의 품행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성적·징계를 받은 사실로 학생 자치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품행이 바르지 않다면 생활지도(경우에 따라서는 징계 등)가 필요한 일이지, 학생 자치조직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는 해당 추천서가 교사의 재량으로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재량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추천서는 작성자의 재량과 자율의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요구한 추천서는 형식적으로 추천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학생회장에 출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과 해당학교 생활규칙에 따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장교사가 허가하지 않으면 학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허가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 추천 서류는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교사의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B학생의 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서류에 추천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B학생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B학생이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실제로 B학생은 학생회 선거를 준비했던 동료학생들, 추천인들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정도의 모멸감, 수치심, 분노, 의욕 및 사기저하 등)에 이르렀다. 이는 자치활동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B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므로 B학생의 학습권과 자기운명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6 | 학년회 · 학생회의 월권행위로 인한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

A고등학교는 학생회 주체로 개설되는 이벤트(수능 관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수금을 강요하고, 돈을 내지 않는 학생에겐 직접 선배 학생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안 내는 사유를 묻고 수금을 요구하는 등 압박 행위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해설

학생회 주체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하나, 상황에 따라 압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임의로 수금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학교에서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도를 통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 권고하였다.

5 정책결정권

학생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갖고,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 등에 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빌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제도적·정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1 | 학교 출입문 통행 제한에 대한 의견수렴 없음

A초등학교는 학생안전 등을 목적으로 '학교 후문 쪽 현관 출입문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였다. B보호자는 재학생들의 거주지가 제한된 출입문 쪽과 가깝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초등학교가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출입문 통행을 제한한 것은 학생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출입문 통행을 제한한 것은 안전권과 이동권의 비교형량을 통해 이동권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안전권이 우선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동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따른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학생안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학생 등 구성원에게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례 2 | 학교규칙 개정절차에서 학생회 대의원회 의견만 수렴

A고등학교는 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학급회의 없이 학생회 대의원회에게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대의원회 의견도 학교규칙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B학생은 개정을 바라는 규칙이 있었는데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고 이렇게 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교육청에 문의하였다.



해설

규범의 제·개정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적법절차에 따라 최종결정을 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진정한 합의 규범이 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학교 의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칙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모든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수렴된 의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생각해보기

학교 구성원 모두가 1인 1표 방식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한가?

해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와 관련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칙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학교의 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의 3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사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1인 1표 방식의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휴대전화 수거 여부 결정, 용모 등 제한 기준 결정은 학생생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상황을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 모두 1인 1표를 갖는 것이 외형상으로는 공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보호자와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생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를 간과하면 ‘다수결의 합정’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은 가질 수 있지만, 결정의 내용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내용적 정당성’을 결여하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결론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1인 1표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3주체 간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방식이 보다 공정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인 학생들만 참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 학교 구성원 및 이웃을 비롯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6 상담 및 조사 청구권

상담·조사를 청구하거나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청원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청구권 또는 청원권 행사로 인하여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 및 학생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청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사례 1 | 교육청 담당자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요청한 학생 수소문

해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구제를 요청한 학생을 찾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학생에게 불이익한 처우하였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하지만 구제 요청 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비밀보장이란 소극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된 학교가 민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민원인을 찾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례 2 | 학생인권침해 학생 참고인에 대한 거짓진술 강요

A고등학교 B교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조사를 진행하자, 참고인(목격자)라고 할 수 있는 C학생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고 하면서, “고맙게 볼 거야”, “너한테 피해가 안 가”, “죽어버릴까”, “아파트 뛰어내릴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심적 부담을 주었다.



해설

B교사의 행위는 C학생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부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위계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부탁’은 ‘강요’로 보인다. 또한, B교사가 C학생과 이야기하면서, “고맙게 볼 거야”, “너한테 피해가 안 가” 등의 표현은 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죽어버릴까”, “아파트 뛰어내릴까” 등의 표현은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B교사는 회유와 협박을 통해, C학생에게 조사받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하여 C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요구한 것이므로, C학생 양심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에게 강요, 위협 또는 협박을 통해 하위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교육청의 권리구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 | 인권침해 구제 요청을 이유로 조종 등 뒷담화

A중학교 3학년 4개 반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B교사는 교육청에 B교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C학생이 없는 반에서 수업을 하면서 “불을 끄면 무섭다고 한다”, “불을 끄고 수업을 해야 겠다”, “불 껐다고 그 애(C학생)가 부모님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 학생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이 있다, 그 어른을 찾아낼 것이다”, “C학생을 때린 것이 아니다, 맞았다고 하는 것은 다 조작되었다”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이야기에 덧붙여, “그런 애는 ‘X신’이다”라고 하면서 칠판에 ‘X신’을 쓰고, “불 끄고 무서워하면 X신이다”라고 말하였다.



해설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C학생이 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신청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이 조사한 것에 대하여, B교사가 느낀 불쾌감 또는 분노를 다른 학급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린 행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C학생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C학생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줌으로써, C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B교사의 행위는 C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이 권리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학생(C학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교육청의 권리구제를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청의 권리구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4 | 민원 제기에 대해 반복적인 불만 표시

교사는 자신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담임교사에게 민원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고, 다른 학급에서 민원이 제기된 학급의 상황을 얘기하였으며, 민원인의 학급에서도 민원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였다.



해설

피신청인은 ○○○학생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오해하여, 담임교사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일종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신청인이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담임교사로서는 일종의 항의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의 민원 제기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더구나 담임교사에게 민원과 관련한 얘기를 할 경우 담임이 해당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학생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A학급 수업에서 B학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으며, B학급 수업에서도 해당 학급에서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거듭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이 담임교사와 A, B학급에서 한 발언들은 민원 제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 위축감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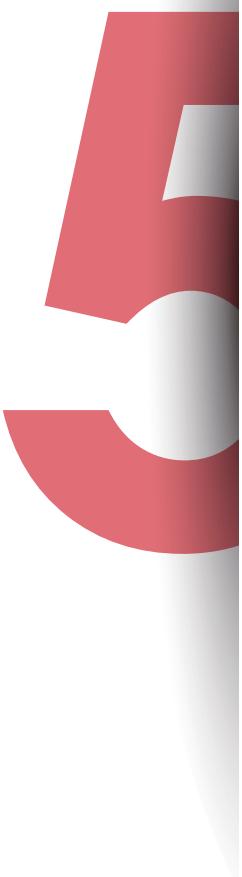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기타 THE REST





사례 1 | 자기(운명)결정권 - 거짓 진학정보 제공하여 학생 진학시킴

A고등학교 B교사는 중학교에 다니며 운동을 하던 4명의 학생에게, A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교육비 면제, 기숙사비 면제, 운동장비 구입 지원” 등을 약속하여, 위 4명의 학생이 A고등학교로 진학하였다. 하지만, A고등학교는 이러한 지원을 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결국 위 4명의 학생 중 3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해설

모든 사람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이전제되는데⁶³,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정되고, 자기결정권에는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인 선택, 공적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과 관련한 사항,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 및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학생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학교로 진학할지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진학은 학생 개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이 진학을 결정할 때 학생의 현재 상태(성적, 생활 등)를 고려하고, 진학 대상에 대한 각종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결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이 있다.

B교사는 학교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피해학생들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판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학생들에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 및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과 진학에 대한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⁶³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 등



사례 2 | 생체정보자기결정권 - 전체 학생 대상 강제소변검사

A고등학교 B교사는, 흡연 학생들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다.



해설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나 건강상태, 정치적-종교적 신념,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⁶⁴하고, 생체정보(지문, DNA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자기정보 통제권’ 또는 ‘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⁶⁵

소변은 개인의 건강상태, DNA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생체정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학생)이 그 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된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정보 제공 여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강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변을 제공하고 검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검사결과를 흡연예방교육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생체)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학교가 교육목적 달성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도 활동을 할 수 있고 흡연 단속이나 금연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흡연 단속이나 금연지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B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64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65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사례 3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앞문 사용금지

A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수업시간 외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앞문을 사용하면 혼이 난다.



해설

학교 교실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교실 앞에는 칠판과 교탁이 있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 쪽에 있는 문을 앞문이라 하고, 교실 뒤에는 게시판과 사물함 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쪽에 있는 문을 뒷문이라고 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칠판을 바라보며 수업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경우에 앞문을 사용한다면 수업에 방해가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업 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교실 앞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학생들이 교실의 앞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행동자유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4 | 일반적 행동자유권 - 다른 학년 복도 출입 금지

학교에서 '다른 학급 출입금지'와 '다른 학년 복도 출입금지'를 운영하고 있다. '도난방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분이다. 학교에서 친구도 만나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학년 복도를 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A학생은 주장했다.



해설

학교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는 학습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일과시간과 성장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곳이므로 생활공간 또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의미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최적의 학습여건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학습(교육활동) 및 공동체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인 여가활동,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왕래, 이동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는 휴식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복도'나 '시험기간 중'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동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출입하는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 이므로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도난의 문제는 사물함 잠금장치를 철저하게 하거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자기 관리를 분명하게 하는 등 다른 방법 또는 교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5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수업중 화장실 사용

A학생은 수업이 시작되고 5분 후 B교사에게 “화장실을 가도 될까요?”라고 물었으나 B교사가 “소변이냐?”고 묻고 “참으라.”고 했으며, 20분 정도 지난 후 “이번엔 대변”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역시 “안 된다.”고 하였다.

다시 5분 정도 지난 후 “진짜 급하다. 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지만 허락하지 않아 “진짜 급하다. 여기서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왜 안 되는 거냐?”고 물으니, B교사는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어딜 갈지 모른다. 담배를 펼지도 모른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A학생은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현재 주머니와 소지품을 검사해도 된다. 너무 급하니 보내 달라.”고 하였지만, B교사는 “안 돼. 그냥 앉아.”라고 하였다.

A학생은 참기 어려워 휴지를 빌려서 준비를 하였고, 다시 “진짜 안 되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B교사가 허락하지 않아 자리에 앉았다가 도저히 참기 어려워 수업 종료 5분 전에 “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화장실로 갔다.



해설

화장실은 인간의 생리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학교라는 사정상 원활한 수업의 운영을 위해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업 중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은 교사에게는 ‘수업할 권리(수업권)’에 해당하고, 학생에게는 ‘학습할 권리(학습권)’에 해당하므로, 수업 중 어떤 행위를 허용할지의 여부는 이들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직무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는 ‘수업권’ 내에서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의 직무권한인 수업권의 행사는 수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 화장실 이용을 일부 제한할 권리가 있지만, 긴급하거나 응급한 상황에 있어 학생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할 의무가 역시 주어져 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긴급성을 얘기하였음에도 평소의 지도방침을 설명하였을 뿐 학생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았으며, 화장실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교사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해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례 6 |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이사짐 나르게 함

교사가 얼굴(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방학 중에 불러 교사의 개인 이사짐을 나르도록 하였는데, 4일 중 이틀은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했고, 이틀은 학생들이 교사의 이사짐을 나르게 하였다.



해설

방학 중에 교사가 학생을 학교로 부를 때에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학생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학중에 4일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학교로 불렀고, 그나마 이틀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관계가 명백한 점을 같이 살펴볼 때, 피해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⁶⁶과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례 7 |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교사의 개인 심부름 시킴

학생들에게 교사 개인 택배 가져오기, 교사가 먹을 물 떠오기, 교사가 사용하는 컵 씻기, 교사가 사용할 생리대 얻어 오기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

다른 교사에게 줄 선물의 포장 재료를 학생들에게 사오게 하고 선물 포장을 시켜, 학생들이 1주일 동안 어렵게 선물 포장을 했다. 결국 선물은 교실에 방치되었다.



해설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관계가 명백한 점을 같이 살펴볼 때, 교사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⁶⁶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



생각해보기

오토바이 등하고 금지, 상점 및 이의신청 제도 없는 벌점제 운영

A고등학교는 학교 생활규칙 중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하고 시 벌점을 주고 있고 생활 규칙상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를 거쳐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벌점을 상쇄 할 수 있는 상점제 없이 벌점제만 운영하고 있으며 부과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B학생은 원동기 등하고 금지 규칙으로 인해 벌점이 누적되어 선도위원회를 통해 퇴학처분 통지 전 퇴학 처분 유예를 조건으로 전학을 권유받아 3학년 2학기임에도 어쩔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해설 생활평점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며 생활 평점제를 생활규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위한 벌점 부여의 근거로 쓸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상점제와 벌점제를 조화롭게 운영하며 학생 선택의 벌점 경감제도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생활태도 형성을 위해 학생 스스로 벌점 경감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A고등학교는 학생의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위원회를 통해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도 학교가 상점제 없이 벌점제만 운영했고,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없었으며, 선도위원회의 퇴학처분 통지 전 학교가 퇴학 처분 유예를 조건으로 B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여 실제 전학이 이루어진 점에서 학생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 보험을 드는 등 관련 법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16세 이상인 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에 국가가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등하교시 원동기 이용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점에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 | |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10년) |
| 경기도교육청 | 「2011-2013 학생인권상담 사례집」(2013년) |
| 경기도교육청 |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 이야기」(2015년) |
|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2019년) |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2018년) |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해설서」(2011년) |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학생인권조례 쟁점별 해설 및 적용 가이드라인」(2013년) |
| 광주광역시교육청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20년) |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2년) |
| 교육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2019년) |
| 교육부 |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20년)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2007년) |
|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 포스, 「차별판단지침」(2008년) |
| 국가인권위원회 | 「UN 아동권리협약 20주년 기념 국제워크숍 자료집」(2009년) |
| 국가인권위원회 | 「혐오표현 리포트」(2019년)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의 이해-인권교육을 위한 핸드북」(2019년) |
| 국가인권위원회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2020년)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12년) |
| 서울특별시교육청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길라잡이」(2016년) |
| 신용인 | 「위험사회와 안전권」원광대학교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2020년) |
| 여성가족부 |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핸드북」(2012년) |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초등교원을 위한 교사직무연수 자료집」(2017년) |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해설서」(2014년) |
| 전라북도교육청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해설서(개정판)」(2016년) |
| 정인섭 |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년) |
| 정희철 | 「기본강의 헌법」(도서출판 여산, 2013년) |
|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2021년)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연구」(2019년)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IV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기타
THE REST

부록
APPENDIX

부록 APPENDIX



부록 1

헌법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헌법의 국민의 권리 규정만을 발췌함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짓을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불인다.
-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 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증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인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 채택

전문(前文)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야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 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유엔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 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유엔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유엔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 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칙된 제한을 받는다.
-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록 3

유엔마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서 론

이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유엔체제 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유엔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유엔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협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년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가족은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환경으로서 공동체 내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유엔헌장을 통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각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23조와 제24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외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 제규정, “소년법 집행을 위한 유엔 최소표준규정”(베이징규정) 및 “비상시·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미리 성년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2조

-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서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 특히 안전, 건강, 직원의 숫자, 직원의 적격성 및 충분한 감독 - 을 지켜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사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 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아동의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아동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존중하되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처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이외에는 한쪽 부모 혹은 양쪽 부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부모와의 이별이 국가에 의한 한쪽 부모 혹은 양부모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모든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하여) 때문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부모·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여타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 구성원의 소재에 관해 본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제공이 관련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한 처리로 인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이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출국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만 제약을 받으며,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일치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未)귀환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해당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다음 경우에 해당된다.

가 : 타인의 권리 혹은 명예를 존중해야 하는 경우

나 :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윤리상 필요한 경우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능력발달에 맞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 윤리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에게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윤리,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왕래에 대하여 독단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국내외의 다양한 소식통으로부터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윤리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와 국내외의 소식통에 의한 정보와 자료의 제작, 교환 및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의 보급과 제작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이 언어상 겪는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양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과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러 방법으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적 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적 환경에 있는 것이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대체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조치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풀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 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적절히 감안하여 조치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 가. 아동의 입양은 해당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법정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관련자가 필요한 상담을 통해 입양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동의했음을 전제로, 자격이 있는 관계 당국에 의해 서면 허가 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을 위탁 양육자나 입양가족이 맡을 수 없다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게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조치와 기준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위탁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해당되는 경우 양자 또는 다자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아동의 타국 내 입양 위탁이 유자격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합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유엔 및 유엔과 협력하는 여타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 데 기울이는 어떠한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신체 장애아동에게 존엄성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며 적극적 사회참여를 조장하는 등 그들이 마음껏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을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곤란을 인식하며, 이 조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장애아동의 전면적인 사회 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을 위해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예방의학,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치료 분야에 대해 적합한 정보를 외국과 교환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교류는 이 분야의 치료분야에 대한 해당국의 대처능력과 기술 및 경험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장애아동의 재활, 교육 및 직업 보도에 관한 정보의 교류가 포함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하여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무엇보다도 용이하게 이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유익성, 위생 및 환경 위생시설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치
 -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적 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여타 모든 실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재정능력과 상황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여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윤리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과 재정상황의 범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가적인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 권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의 정기 출석을 권장하고 중퇴율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한다.

나. 인권과 기본 자유 및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을 존중한다.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한다.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킨다.

마. 자연환경을 존중한다.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이나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따른다.

제30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 혹은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민족의 아동 혹은 원주민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칙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칙
 -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칙의 수립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불법적·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불법적·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불법적 또는 전횡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원 혹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당국에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유박탈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1. 당사국은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아동관련 국제인도법을 존중하고 이 법이 준수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 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연장자 순으로 징집해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어떠한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혐의 혹은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한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취한다.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동이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아동을 다루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행위를 했거나 안했다는 이유로 형사 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 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된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 받는다.

1)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 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독립적이고 공평한 소관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판결시에는 법률상의 지원을 제고하고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 당하지 아니하며, 대등한 조건 하에 반대편 증인을 조사하고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조치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소관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충분히 존중받도록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호가 완전히 존중되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아동을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조치

4. 아동을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감독 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 및 감호소 보호에 대한 여타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활용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법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국제법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국가의 사법제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4. 아동권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 첫 번째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이전에 유엔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으로 임명한 당사국의 국가명과 함께 알파벳 순으로 임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유엔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투표에서 최대득표와 절대 득표를 얻은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임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첫 번째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첫 번째 선거 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되 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유엔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여타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 되나 이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유엔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유엔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같은 권리의 항유와 관련하여 이를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유엔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매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포괄적인 이해를 돋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나”호에 따라서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심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여타의 자격이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유엔의 여타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유니세프 및 기타 자격이 있는 기구에게 발송할 수 있다.
- 다. 위원회는 유엔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도록 유엔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와 제45조에 따라 접수한 국가보고서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사항에 대해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어떤 당사국을 막론하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0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유엔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모든 당사국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게 되면, 이에 찬성한 당사국과 기존의 협약서 및 이전의 개정안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제51조

1. 유엔사무총장은 각국이 이 협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 작성한 유보조항 문서를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목표와 목적에 위배되는 유보조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사항의 철회는 유엔사무총장에게 통지서 발송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보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기획

송호창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필우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경영센터장
주원영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과장
고인자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윤여복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김영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종태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장
김영주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윤석연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김상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이정순 |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과장
김지훈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 집필

최지혜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이동주 |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담당
조수정 |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인권경영센터
이승태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민주시민교육담당
허창영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하형주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유경환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김종기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김병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김여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최윤선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침해 사례집 - 9개 시도교육청 공동사례집」

■ 인쇄·발행 2022. 11.

■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편집 신촌디자인인쇄 032.885.8188

